

제43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4)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2)
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4)
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2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1)
2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23.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3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3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상정된 안건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 3
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 3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 3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 4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 4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 4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 4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 4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 4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 4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4) … 4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 4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 4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 4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2) … 4
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 4
1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4) … 4
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 4
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 4
2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 4

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1)	4
2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4
23.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	4
24.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68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68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68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68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68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68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68
3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68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93
3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93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	93
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93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93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93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 상정하기로 합의된 법률안을 경찰청,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2.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6)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9)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7)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4)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8)
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6)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2)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2)
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4)
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7)
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9)
2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9)
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1)
2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4)
23.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10시07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까지 총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안심사 하면서 경찰청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상식 위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 등 총 23건의 법률안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통하여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개정하고 약칭을 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17개 조항 중 12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2025년 12월 26일에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명칭 변경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러한 명칭 변경은 재향군인회와 유사하게 퇴직 경찰관의 단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위원 서범수 위원님이 내신 만큼 통과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상식 위원님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경우회라 했을까요? 히스토리를 압니까? 지금처럼 경찰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양부남 위원 보통 ‘우’ 자를 넣잖아요. 검찰도 검찰동우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급을 타파하고 현직을 떠난 이상 서로 수평적 관계를 중시해서 이런 용어가 생겼을 겁니다, 제 너피설. 아마 맞을 겁니다, 수평적 개념으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럴 수 있겠네,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으신 이야기입니다.

○양부남 위원 보통 다 ‘우’ 자를 쓰잖아요, 퇴직한 후에는.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전문위원 나아정 소위원장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전문위원 나아정 예.

9페이지입니다.

국가가 재향경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범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로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유사업법례를 보시면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에서든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의 경우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향교정동우회의 경우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운영으로 쓰거나 아니면 운영 및 운영과 사업으로 쓰는 경우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재향경찰회를 통해서 국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사업이라는 것을 넣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운영 플러스 사업, 사업을 첨부시키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지금 재향경찰회에서 수사교통민원 보조사업을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 중인 게 있습니다. 현실화……

○소위원장 서범수 근거를 현실화시키자는 이야기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김성희 위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식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본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서범수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한민국경찰회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정관으로 봄. 다만 정관에 이 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안의 경우에는 내부절차 준비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미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서범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맞게 개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정관 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상식 의원안 수용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정관 변경 시에 규제

최소화와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2000년도에 경찰청장 인가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식 의원안과 같이 인가권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가권 없이 이렇게 시행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 이상식 의원안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두 가지지요, 여기에는. 3개월 후에 할 것이냐 6개월 후에 시행을 할 것이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정관을 경찰청장 인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사항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지금 경우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우회 의견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우회도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폐지가 된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가를 안 받고 2000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2000년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운영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하면 인가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사업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규율을 받기 때문에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인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DJ 대통령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하는 그런 원칙하고 비슷하네, 그렇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정관에 대한 것은 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 단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 있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수사·교통 이런 데 대해서 민간보조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 사업에 대한 관리는 경찰청에서 누가 합니까?

○이상식 위원 경무국장이 한번……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제가 담당을 하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어느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 하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권철승 위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던데,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사단법인입니다.

○**권철승 위원** 사단법인인데 정관을 변경하면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안 받는 게 이게 기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는 말입니까?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주무관청의 그것을 받잖아요, 정관 변경하면. 기본 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식 위원** 누가 이것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논쟁이 이상하게 번지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범수 의원안도 정관을 인가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법률에 들어가서 인가를 받는 것으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는 아니신 것이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이미 2000년부터 지금 25년 가까이 인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전례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경찰들한테 여쭙보면 25년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지금 저희가 인가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 정관 변경할 때 대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대의원들 과반 이상 참석, 3분의 2 찬성으로 해서 정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권철승 위원** 그것은 정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정관에 정관을 바꾸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제가 경우회 정관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거기의 회장을 뽑거나 임원을 뽑거나 하는 방식들을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꿔 놓고 주무관청에다가 인가를 안 받는 방식,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하고 허가하고 이럴 때 다 주무관청한테 정관 자체는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제가 경우회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다—전체 틀로 봤을 때 이것만 예외를 둔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싶은 데,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네요.

○**소위원장 서범수**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먼저 저희 사회에서 제복의 자부심이 정말 사회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재향경찰회’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너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인가의 문제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아니라.

○**이상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박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 재향경찰회가 퇴직 경찰분들이 모여 있는 자부심이 있는 단체인데 그래도 그냥 민간단체일 거예요.

○**권철승 위원** 사단법인입니다.

○**박수민 위원**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는데 정관 변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받는지 그냥 신고사항인지 그런 것만 체크

하면 될 것 같고, 기존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돼 왔다면 기존의 경로의존성을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됩니까? 제가 답답한 게 경찰에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라.

2000년도에 경우회법을 만들면서 경찰청장 인가권을 폐지했잖아요. 그때는 아마 경찰 단독으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이상식 위원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박수민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동우회 어찌 돼 있어요, 소방동우회? 그다음에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 검찰동우회 이쪽이 다 어찌 돼 있냐고. 그것 지금 경찰에서 비교 안 했지요? 아마 그때 경찰만 단독으로 이것 폐지하자고 했어요. 경찰같이 간 작은 조직에서 자기 혼자 했겠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소방이나 경찰은 다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그것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답답하네, 이 사람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경찰회’ 명칭 변경은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고 인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수민 위원 좋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김성희 위원 잠시만요.

아니,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마치 저희가 인가권을 논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인가권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김성희 위원 지금 인가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박수민 위원 그렇지요.

○김성희 위원 인가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시 할 것이면 누군가 법안을 내서 통과시킬 문제고.

다만 우리는 그냥 공포 후 6개월이나 3개월이나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6개월로 하면 되겠다라고 경찰에서 의견을 줬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만 정하면 되지 여기서 인가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법안 논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승 위원 제가 인가권을 논의해서 넣자는 게 아니고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양부남 위원 인가권 여부는 지금 여러 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동우회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우’ 자인데 여기만 왜 ‘찰’로 해? 다시 토론해야 돼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부칙을 논하잖아요, 6개월이나 3개월이냐. 지금 이것 하다가 인가권으로 왔는데 인가 문제는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까지 하고 뭔가 좀 권한이 더 주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정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를 들면 부칙만 6개월이나 3개월로 하고……

○소위원장 서범수 정리하겠습니다.

‘경찰회’로 가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근거조항 만들고 부칙 조항은 제 법률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식 의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대신에 그것을 해야지. 정관 변경을 인가하느냐 여부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가라고 하면 가져다 놓고 ‘정관 뭐 변경했어? 이것 돼,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라고 정하는 게 인가인 것이고, 허가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반사항이 생기면 충분히 교섭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단법인들도 경제단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부칙 조항에 대한 부분은 제 법안을 철회하겠다. 그다음에 인가는 관련 없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단지 아까 인가 부분은 다음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다른 자리에서.

○박덕흠 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이라든가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으면 사단법인인 경우에 정관은 사실상 통제를 받아야,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서 다른 데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시설 확대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안, 이견대 의원안 소위자료

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제2조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을 각목으로 가부터 차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돌봄센터나 한국랭귀지스쿨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어린이 이용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대상 시설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안전관리 및 감독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임대상 시설의 범위를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일정 부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일부 수정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저희가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표에 정부 측 수정의견 보시면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행법상 가에서 차목 중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준하는 시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가에서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 이렇게 가자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가부터 차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부터 차에 준하는 시설 중, 여기 준하는 시설은 어떻

게 정하는 거예요? 가부터 차까지 시설은 법은 안 봤지만 명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열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2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준하는 시설은 무슨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준하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해요?

○소위원장 서범수 말씀하십시오.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좀……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약간 사각지대들이 있으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거된 시설에 준하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양부남 위원 이견대 의원이나 서범수 간사께서 낸 안과 차이점이 뭘니까, 똑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정부안에서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말장난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 안하고 이견대 의원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양부남 위원 제가 차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한 무슨 특례가 있는가요, 어린이통학버스 시설이 되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양부남 위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왜 운영하려고 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차량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하면.

○양부남 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보조금을 타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보조금 얼마나 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준하는 시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린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유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관리되고 있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양부남 위원 어린이통학버스의 대상이 되면 국가로부터 차량 구입 같은 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단?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보조금도 받지만 의무도 생깁니다. 반드시 동승 보호자도 탑승해야 되고……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해서 돈도 받고 또 안전도 확보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갈 수가 있다, 서범수 의원안이나 이견대 의원안으로 하면?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양부남 위원 크게 비슷비슷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준한다는 말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이걸 확대하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좋습니다. 이대로 가도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지금 운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현재 적극행정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적극행정으로 현재……

○소위원장 서범수 법 개정할 필요도 없네, 그러면.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짓수특공무술학원 되나요, 안 되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안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안 됩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서는 이런이런 게 빠진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 줘야……

○박정현 위원 아직도 경찰이신 줄 알고……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교통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이 빠지니까 이걸 대상에 집어넣자 이 이야기잖아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준하는’ 이런 말이 없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은 순환 논리인데.

○박정현 위원 양부남 위원님 양해하시면……

○양부남 위원 저 양해합니다. 양해하는데 별 실익이 없는 논의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렇지요.

○양부남 위원 이것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인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는 굳이 이런 수식어가 안 들어가더라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를 하면 통학버스 시설 하는 데는 돈이 조금 들어가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동승자가 들어가야 되지요? 동승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 안 해주지요, 아직? 지원합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경찰청에서 너무 법안심사를 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나

도 공부 안 하고 온다.

○**양부남 위원** 아니, 동승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소위원장 서범수** 왜냐하면 동승자가 한 사람 타야 되거든요.

○**양부남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동승자 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동승자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부 지원을 한 자치단체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아니, 나는 ‘이 시설이 되기 싫어, 동승자 돈 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너 시설이니까 적용을 받아라, 동승자 고용해라’ 한다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때 어린이통학버스 만들 때 그런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래 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전문위원,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시행일을 서범수 의원안, 이진태 의원안 모두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임된 대통령령의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대로 6개월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법은 계속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교통법규 위반 반복 시 과태료 가중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시 과태료 중과하는 소위자료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었을 때에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3년 이내에 다시 발생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가중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제재 범위의 적정성·형평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3년간 7회 미만 일반 적발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과 한국ITS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했을 때 3년간 7회 이상인 상습 적발자의 경우에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반 적발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설정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에 제재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간 제재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중 부과 기준 및 적용 대상을 법률에서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중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1회 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해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의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안 수정수용 의견인데요. 중과되는 항목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한 위반으로 한정을 하고 또 재위반 기준도 연간 3회 이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님.

○권철승 위원 이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속도 위반으로 만약에 차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날아오잖아요, 차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누가 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살피잖아요. 그런데 찾아서 어떻게 가중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카메라로 단속이 되면 일단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고요. 소유주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주 등, 즉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되면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범칙금을 낸다고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직접 운전자를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권철승 위원 확인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확인을 시켜 주지 못하면 그것을 확인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범칙금을 먹이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원래 원칙은 운전자가 밝혀지면 운전자한테 범칙금을 먹이는데 통상 속도 위반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운전자가 잘 안 밝혀져서 이 경우는 그냥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실제로 그렇게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요? 현실에서 할 방법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차량 소유주가 반복해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중과하는……

○권철승 위원 이 법이 실제 운전한 사람한테 가중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과태료는 소유자한테……

○권철승 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것 압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 차이는 분명히 알 거고. 그러면 과태료를……

지금 권철승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나 하면—제가 법을 냈지만 저도 동감합니다만—과태료라 함은 소유자한테 주는 거지 직접 운전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다면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반복에 과태료를 중과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권철승 위원 아니, 확률적으로는 맞지요. 확률적으로 맞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항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소위원장 서범수 항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물으면 되지 범칙금 부과하면서 벌점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태료를 무는 게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과태료를 내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차량한테 과태료를 내는 거지.

○소위원장 서범수 차량 소유자한테.

○박덕흠 위원 차량 소유자.

○권철승 위원 법이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과태료 처분이라는 게 원래……

○권철승 위원 차라리 그냥 과태료 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운전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있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있을 수 있지요.

○권철승 위원 특히 법인차 같은 경우에 되게 많지요.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과태료를 중과하면 계속 소유주한테 과태료 딱지가 오니까 그 소유주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덕흠 위원 우리가 기사를 두고 운전하는데 기사가 위반을 하면 돈을 소유주가 내잖아, 우리가. 그렇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역구 가면 저도 차가 있고 여기에 오면 차가 있는데 전부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주가 접니다. 나한테 다 붙어요, 나한테. 나한테 다 과태료 딱지가 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그 벌점, 빌려 준 사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때 올 때마다 기사한테 좀 뭐라 하지요. ‘야, 법규 위반 좀 하지 마라, 나 지금 잘못하면 상습적으로 과태료 부과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어는 할 수 있지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을까요?

○박정현 위원 위원님 때문에 과태료 하는 거 아니야?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권철승 위원 관리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

○소위원장 서범수 관리 책임이지요.

○박덕흠 위원 관리 책임으로 과태료를 무는 거지요.

○권철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 책임 묻겠다는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박덕흠 위원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법은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횡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가중하자고 하는데 경찰청 의견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또……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보행자보호 위반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4개에 대해서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네 가지에 대해서 중과할 위반 항목을 한정하고 재위반 기준을 연간 3회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중과하자.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횡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중과하는 것은 없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연간 3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3회 이상인데 4회 됐을 때, 5회 됐을 때, 6회 됐을 때 그 횡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가중할 생각은 없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연간 4회 했을 때 1만 원이면 5회가 오면 2만 원 하고 6회 하면 7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할 거예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은 법에서는 연간 3회 이상이지만

대통령령에서는 5회 이상이면 20% 가산, 10회 이상이면 50% 가산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개정안은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적용례에서 개정된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위반 횟수 역시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부과에 적용례는 가중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고 형벌 및 행정처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운전자 정보 정정 신청 근거 마련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박덕흠 의원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정보 등에 대해 운전자의 정정 신청 근거 마련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전자가 법률 조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정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정보의 정정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는 잘못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시도경찰청장의 정정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신청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먼저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법에 넣어야 되나요?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됩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이때까지 그 법이 없다는 거고.

○양부남 위원 아니, 법이 없어도……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은 없어도 충분히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양부남 위원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뭐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법적 효력 면에서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국민들이 법률에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정 신청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거부에 대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먼저 정정 신청을 한 후에 다음에 다음 절차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법원에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사고 기록삭제에 대해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저는 크게 이 법이 없어도 똑같은 권리구제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발의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 시 첨부하는 증빙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 6개월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도 6개월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 수시적성검사 신청 근거 마련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의사,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가 연간 3만 6000명 수준인데 실제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가 1만 4000명으로 10명 중 6명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공단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상황입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본인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편입되기 위한 신고를 거부하지만 주변의 가족, 이웃 등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운전자를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3페이지, 현행법상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편입 현황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경우가 기관 통보를 통해서, 기관이 경찰청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을 통해서 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밑의 기관 통보 절차를 보시면 병무청이나 보건복지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도로교통법 89조에 그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관련 협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통보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언 측면에서의 수정 사항인데요.

개정안 89조의2가 의사,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89조의2는 본인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밑에 89조를 보시면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본인 이외의 다른 기관이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항에 함께 추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89조의2에 내용을 넣었고 그리고 의사,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89조의2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90조 2항을 활용한

다 이런 취지인가요?

○전문위원 나아정 89조에 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89조에 이미 운전자 본인이 아닌 기관이나 사람이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서 도로교통공단 이 ‘너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다’라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항에 경찰청장에게 의사나 아니면 경찰공무원, 신청 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맞추는 차원입니다.

○양부남 위원 실질은 똑같네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실질은 동일합니다. 법문을 좀……

○양부남 위원 체계상.

○전문위원 나아정 체계상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가 무슨 권한으로 통보를 해요? 왜 통보를 하는데?

○전문위원 나아정 권한은 아니고요. 이것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장 서범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내 환자가 왔다, 이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청장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의료행위를 해서 의사가 지금 자기가 업무상 취득한 걸 누설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문위원 나아정 그래서 그 3항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호영 의원안에도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이긴 한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여기에서 면제를 하면 형법상의 그 조항은 완전히 면제가 된다 이 이야기에요?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면 경찰도 이 사람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다라고 통보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지금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단속 현장에서 비상식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의심될 경우에 사고 정황 보고서라든지 이걸 첨부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다고 경찰은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이 수시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의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는 주치의 제도가 없잖아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펑크가 날 건데 의사가……

○양부남 위원 수시 적성 대상자로 통보를 했는데 안 받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양부남 위원** 취소돼요. 이것 굉장히 본인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조치거든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그래서 의사에게 지금 권한이라기보다는 재량으로 했어요. 신고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적 통보 질병은 한정돼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게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천 제일시장에 난 트럭 사고는 모야모야병이라는 신경질환 질병입니다. 그거는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신체적·정신적 장애, 특정 사고 이런 거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있잖아요. 운전 교통사고가 연간 규모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야 이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여기 있잖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통보받아 가지고 수시적성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논리. 그러면 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이런 게 1년에 사망 사건이 몇 건 발생했다 이런 기초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그렇게까지 통계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그냥 특별한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이 한두 건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아닙니다. 그전에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해서……

○**이상식 위원** 그러면 사례는 몇 건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사례들은 조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네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주로 의견이 뭐지요?

○**박정현 위원** 반대 의견은 오히려 치료를 안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 이거야말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이런 걸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전문위원 나아정**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경찰·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서 운전자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는 의료현장과 환자 진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의 역할은 의학적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제도는 재량규정으로 의료현장의 신뢰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목적의 의학적 판단이 행정조치로 연결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행정적 판단의 근거로 오인되어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의료인이 불필요한 민원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이었어요. 이러한 구조는 의료

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진료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환자가 운전면허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치료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은폐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 관리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교통 안전 확보보다 오히려 치료 중단과 관리 공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저희들이 2025년 10월 대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할 때 신청은 의사의 재량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박정현 위원 사실 의사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책임도 안 질뿐더러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환자가, 그 운전자도 왜냐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발을 할 수 있는데……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그래도 의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환자를 위해서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거고요. 의사의 재량으로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하고 다시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서 이 운전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재판정하게 됩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 것 같냐 하면요. 의사는 자기한테 진료하러 온 사람을 이상하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러 가는데 나를 경찰청에다 신고를 해?’라고 동네에다가 오만 소문을 내고 다닐 걸 생각하면 어떤 의사도 자기의 의무감 때문에 환자를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근거는 없다고 보는데, 거꾸로 대한의사협회의 걱정은 신고를 안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해? 너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라고 소송을 거는 게 싫으니까 법 조항에 우리는 좀 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신 안에서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사람을 안내하고 신고하게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지금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적 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기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졸아 버립니다. 그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보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가지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숙의를 좀 더 합시다. 의사협회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 픽시자전거 운행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이 금지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 11월 26일에 1차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도로교통법의 정의 조항 그리고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그리고 벌칙 조항을 통해서 사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현재 법에 따라서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법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조행위의 처벌을 넣으면 충분히 수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그리고 지금 1소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통합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14세 미만은 규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개정보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 도로라면 모든 도로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시골에도 도로, 예를 들면 2차선 도로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적용되는 것……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포함이 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자전거 못 타지.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인도에서 타는 거는요, 픽시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거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차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픽시자전거는……

○소위원장 **서범수** 픽시자전거도 차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차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차니까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이야기지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도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는 분, 도로에서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는 거는 브레이크 없는 장치니 단속할 수 있고 또 픽시자전거도 차니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따로 도로교통법상에 이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픽시자전거니까 운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PM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은 1소위에서 다룰 건데 그거는 그것대로 다르게 가면 되는 거고.

○박덕흠 위원 과태료 20만 원 때문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픽시자전거가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PM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 운전 시에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활성화법에서 규제를 하고 또 도로교통법에서 추가로 더 규제를 한다면 PM 운행 금지 조항과 같은 그런 규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생이 탄다, 12살짜리가 탄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12살짜리는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그 애들 타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픽시.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여기 PM 같은 경우에 13세 미만이 PM을 운전했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PM은 전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PM을 하려면. 그러면 이거는 면허증 없어도 되잖아요. 픽시자전거하고 PM은 차원이 다른데.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인가 그게 있어야 될 거고 이거는 면허증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자전거 면허증 있나요? 필요 없지. 그런 차원에서 다룰 거고.

그다음에 이것의 경우에는 그러면 초등학교생 5학년이 탄다, 어떡할 건데?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13세 미만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할 수 있나요, 지금?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현재는 안 됩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은 자동차를 13세 미만이 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PM만 처벌하는 건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13세 미만은 자동차 면허를 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면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타고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처벌을 하느냐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형사 미성년자라 운전자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부모는 처벌하냐고요? PM은 한다면서요. PM만 하고 자동차는 안 하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PM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고 그 부분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지.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야 뭐 어린애들이 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픽시자전거는 애들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러니까 그 경우에 PM과 같이 이렇게 규제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대안으로 만들어 오든지.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 묶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경찰 의견이신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그 법대로 논의를 하고, 그 법이 규제하는 것을 봐 가면서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PM 금지 규정과 같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픽시자전거를 아예 불법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예 브레이크 장치 없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픽시?

○경찰청차장 유재성 픽시자전거가 원래 나올 때는 브레이크가 다 있어서 나오는데 그 이용자가 브레이크를 떼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 게 있고 순수히 선수용으로 아예 브레이크 없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선수용은 주문 제작으로 아예 브레이크가 없이.....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처벌해요, 그러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운행이 되는데 그것은 도로에서 운행을 못 하게 돼 있고 경기장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왜 도로에서 운행을 못 해요, 처음부터 픽시자전거 나오는 것?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것도 도로교통법상에 차는 제동장치 이런 것을 갖추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소위원장 서범수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운동장 안에서, 픽시 아예 브레이크 장치 없이 하는 것은 운동장 안에서만 가

능하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운동장 안에서. 그런데 그게 도로로 나오는 순간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달린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떼 버리면 불법이다, 자전거 활성화법에 의해서?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자전거 활성화법이 개정이 되면……

○소위원장 서범수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불법이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그 주행하는 픽시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이 돼 있으니 이것 추가 없이 그냥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현재 상태로는 픽시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새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희 위원 제 의견은요, 이것을 다 보류해 놔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소위에서 논의돼서 정리되면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도로 해 놓고…… 일단 보류를 해 놓으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박덕흠 위원 결국 픽시자전거는 타면 안 되는 거네요, 브레이크 없는 것은. 탈 수도 없잖아요, 시골에 2차선이면 인도도 없는데.

○양부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별도로 규정을 안 두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론이, 해석이, 말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논의와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은 이 법에 넣어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규정을 넣는 것도.

○김성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고동진 의원님 법안대로 하는 내용은 이미 처벌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3세 이하의 처벌 이런 조항들이 없는 상태니까 자전거 이용법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13세 이하는 어떻게 하는지 문구를 좀 포함해서라도 그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그 논의인가요? 13세 미만자를 처벌하자는……

○소위원장 서범수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양부남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이것 처벌조항을 별도로 둘 것인지 여부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를 하면서 현재 법만 가지고,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반론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두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처벌행위의 명확성을 위해서?

○박덕흠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경찰에서 제동장치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제동장치 없는 것을 이렇게 과태료로 규정할 게 아니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전거법에서 그 부분을 먼저 규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그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단속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벌금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픽시자전거를 몰다 걸리면 벌금 2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즉심으로 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개정을 하면 과태료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멀쩡히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건데 법을 정해서 과태료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고동진 의원님이 왜 그렇게 설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 지금 픽시자전거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정확하게 그러니까 계도까지 포함해서 728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계도…… 아니, 실제로?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그중의 4건이 즉결심판 청구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범칙금 4건?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아니, 즉결심판 4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범칙금은? 다 합치면?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범칙금은 없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벌금 20만 원…… 한다면?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즉결심판을 청구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벌금 5만 원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즉결심판 4명?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나머지는 전부……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계도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계도했어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예.

○소위원장 서범수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지.

○권철승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네요, 판결이. 법은 문제가 없는데 판결이 문제가 있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에서 단속을 안 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김성희 위원 그런데 경찰도 억울한 건 요즘은 단속을 피하려고 브레이크 선은 달아 놓고 브레이크는 안 잡히게 해 놓고 픽시를 몰고 다니거든요. 그것 지나가는 차를 잡고 너 브레이크 한번 잡아 보자 이럴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애들이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말이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흠 위원 보류하고 넘어가요?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보류합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관련해서 하는 것 봐 가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음주운전 방조행위 규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조승환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조행위의 유형을 자동차 등 제공, 운전 권유·독려, 자동차 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을 명시해서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방조행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박정현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공,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독려하는 행위, 자동차 등에 동승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조승환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운전을 지시·권유·독려하는 행위,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자동차 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요. 현재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중 동승자가 있는 경우 대비 동승자 등이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된 건수의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1.5%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법안을 제출하신 내용인데요. 방조행위로 이 행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승환 의원안에서 2호의 지시 조항은 방조보다 교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사로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방조로 묶어서 처벌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 전의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인데요. 현재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최상위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보시면 148조의2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규정을 원래 담고 있었는데요. 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했고 그리고 약물운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가중처벌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박정현 의원안, 조승환 의원안이 제안이 되어서 약물운전이 들어가 있던 4항에 약물운전하고 음주운전의 방조행위를 함께 넣었는데요. 지금은 약물운전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148조의2(벌칙) 조항이 음주운전, 약물운전 그리고 방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을 신설해서 방조행위를 넣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0페이지를 보시면 7항을 통해서 음주운전 가중……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그다음 조항으로 넣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3페이지로 오시면 또 이 방조한 사람 외에 주도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8페이지 위에 보시면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도한 사람 역시 방조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에 묶여서 좀 더 약하게 처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견 없으시지요? 제가 낸 법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전문위원,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전문위원 나아정 148조의2에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물운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조,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7항에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44조의2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조행위에 대한 각 호를 방조의 범위에 맞도록 일부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 제공하거나……

○전문위원 나아정 운전자에게 권유·독려. 내용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 두 번째가 운전자에게 운전 권유·독려…… 지시는?

○전문위원 나아정 지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6페이지·7페이지에 걸쳐 있는 수정의견을 보시면 1호에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소위원장 서범수 제공하는 행위.

○전문위원 나아정 그리고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

○소위원장 서범수 권유·독려하는 행위.

○전문위원 나아정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

○소위원장 서범수 술을 제공하는 행위.

○전문위원 나아정 그리고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까지를 방조행위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 동승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방조가 되지요?

○김성희 위원 방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통념상의 방조하고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방조가 다른데 방금 양부남 위원님 말씀처럼 앓는 것 자체를 방조로 보는 것은 법정용어하고는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위원 법정용어도 용어지만 앓아서 탔다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이런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법의 목적에 맞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전문위원 나아정 4페이지 참고를 하나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65조 2항의 경우에는 취기가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 제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은 차량의 운전자가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자기를 운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뢰하여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여기 일본의 판례하고 이 규정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일본의 판례는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입법은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동승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철승 위원 동승에 고의 동승도 있고 자기가 강요해서 타는 동승도 있고……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동승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승을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되지요. 이러한 일본의 해외 판례는 처벌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지요. 술기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운송할 것을 요구했다 하는데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면……

○박정현 위원 아니, 이 조항에 보시면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승이 아니라.

○양부남 위원 술에 취한 상태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타는 것 자체를 음주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지까지 운전자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승자가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냥 태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동승한 자를 처벌한다? 너무 확장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방조지요, 일종의. 방조의 확장인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니까 운전자는 음주운전자고요. 거기에 동승하는 사람……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게 맞냐 이것이지요. 나는 근본적으로 그게 의문이 드는데요. 음주운전자와 타는, 내가 탔다는 것만으로 나를 처벌한다?

○박정현 위원 말리지 않은 거지요, 탔다는 것은.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 국장님이 이 부장하고 김 대리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가서 소주 한잔 한 다음에 ‘야, 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현행 법적으로 하면 이 차를 타면 처벌받으니까 ‘나는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동승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데 동승을 거절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는 거지요?

○양부남 위원 동승의 경위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받는 거지요, 이 조항대로 가면.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에 3호에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상태지요.

○양부남 위원 술을 더 먹이는 거지.

○소위원장 서범수 또 가서,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었을 때 그 술 판 음식점 사장도 처벌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된다고, 3호는.

○박덕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상, 저희 집에 간사님이 오셨어. 자가 운전하고 왔는데 술을 주면 분명히 운전할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운전하게 하면 안 되지요.

○박덕흠 위원 아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우리집에 와서 내가 술을 줬어.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어.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음주운전을……

○소위원장 서범수 해서 걸렸단……

○박덕흠 위원 이것 좀 애매하겠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박 위원님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잡혀가도 어디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동승 조항은,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동승 조항은 여기 일본의 예처럼, 해외 입법례처럼 고치는 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나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뢰해서 동승하는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동승으로 하는 것은 너무 확장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44조의 3호는 덜어 내고, 4호는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 그러니까 반대하신 건 아니고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양부남 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한다면 좀 제한하자 이것이지요. 제한하고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행위를 명확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 입법례처럼 술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나를 태워다 달라, 운송을 요구해서 동승하는 경우, 그러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동승이라는 표현을 해외 입법례처럼 바꾸든지……

그런데 그것은 2호하고 비슷하게 돼요. 운전을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태워 달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동승은 여러 가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어쨌든 수정 말씀을 드리면 44조의 3호는 덜어 내고 4호는 저는 이것을 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서 올리시면 어떻겠어요?

○권철승 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비고(수정의견안) 처벌규정에 그런 내용이 좀 있네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처벌을 하려면 그것을 알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면서지만, 물론 대전제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동승하는 경우인 거거든요.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동승했다라고 그것을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겁니다. 자기가 동승을 요구했다거나 의뢰했다라면 책임이지만……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경우랑, 일본 법리랑 한국 걸 비교해 보면 권철승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권철승 위원님이 ‘야, 내가 몰 테니까 옆에 타라’라고 하면 제가 그것을 거절 못 하면 처벌받는 게 한국식인 거고 일본식은 저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난 옆에 앉아서 갈 테니까 나 좀 데려다 줘라’라고 하면 처벌하는 거잖아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후자는 운전한 사람이 취한 것도 알고 내가 거기 타서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들어가는 거고 전자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까지 처벌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양부남 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법대로 동승을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동승을 처벌한다면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말한 그런 케이스도 처벌해야 된다는 불합리가 나타난다 이거지요.

○권철승 위원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타면 이게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이 있고 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처벌 수위는 다양하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술에 취한’이라는 것이, 술에 취한 게 어느 정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하나 그 문제잖아요. 그냥 술에 취한 것, 술에 취한…… 이게 술에 취한 상태, 예를 들면 밥 먹다 반주로 소주 한 두 잔 먹었어……

○소위원장 서범수 결과론적으로 0.03 내지는 0.08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0.03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잖아, 자기가.

○양부남 위원 박덕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술을 마신 것하고 취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요.

○양부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0.03?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 양부남 위원 0.03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동승한 사람이?
- 이상식 위원 결과로……
- 양부남 위원 어떻게 결과로 처벌합니까?
-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음주운전을 굉장히 용인해 주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술을 한잔만 마셔도, 그게 측정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 양부남 위원 그러면 조항을 바꿔야지요, ‘술을 마심을 알면서’.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가 아니라……
-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수정을 해야……
- 양부남 위원 전제 조건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가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면서’……
-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앞에 전제가 전부 현행법이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 권철승 위원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 권철승 위원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은 음주운전이라고 안 보잖아요.
- 김성희 위원 저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서의 현재 제가 생각하는 미비점은 요즘 음주운전에 걸린 많은 사람이 그다음 날 아침에 걸린 숙취운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야구선수도 자기 딸을 데려다 주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법대로 하면 딸도 처벌이 되는 거지요?
- 권철승 위원 아니지, 취한지 몰랐지. 딸은 몰랐지.
- 김성희 위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저녁에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들어온 것 봤을 텐데요?
- 박정현 위원 그것까지 감안할 수가 없지요.
-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말라가 아니라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식 위원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그런 법 목적은 있는데 이게 구성요건 하기에 되게 어렵다, 그렇지요?
- 소위원장 서범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박정현 위원님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아까 3호는 삭제해 하고……
- 박정현 위원 예, 덜어 내고 그리고 4호는 지금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 소위원장 서범수 어떻게 명확성……
-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 이상식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 위당을 정확하게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데……
-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이것 좀 해 오세요.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법문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있고요. 술에 취한 걸 알면서 동승한 것에 대해서 방조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으로 탑승을 했든지 어젯밤에 아빠가 술에 취했는데 아침에 그게 취기가 있는 걸 모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 과정에서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조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법안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음주운전 방조범을 형법상 이론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교통법에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면 음주운전을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처리하고 이것은 진행해 주시는……

○**소위원장 서범수** 전제가 그러면 앞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하는 행위……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경찰청교통기획과장 조우종**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식 위원** 억울한 사람은 거의 발생할 우려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음주운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양부남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조사에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밝힌다는데 이 조항 자체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가서 조사받아야 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것 다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리 판단이, 검사가 죄가 되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 조항을 불명확히 해 놓으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무죄받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지. 구성요건을 이렇게 불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책임조각사유로 무혐의해 준다?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음주운전을 안 할, 동승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해 보면.

○**양부남 위원** 제가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 차원을 떠나서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처벌조항에 있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책임조각 돼 버린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나중에 다 책임조각 될 사람들이 전부 가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아주 편의주의자야.

○**소위원장 서범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해 갖고 식사 후에 정리를 합시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앞에 1, 2는 문제가 없고 3은 덜어 내고 4만 구체화시켜서 하자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합시다.

점심시간까지 경찰까지는 다 하고 갑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칙, 11페이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벌 규정을 인식하기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점심시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김소희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학교 주변 지역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금지장소와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유치원, 대학 등까지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에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요. 김소희 의원안이 이성권 의원안보다는 규제 대상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시간과 관련해서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시간인 평일 일과시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확성기 사용의 제한을 통한 학습권 보호의 필요성 및 학교 인근의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규제 대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성권·김소희 의원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가 1만 1835개교고 특수학교 등이 351개교로 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더 큰 소리로 주장하고 싶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넘어서 개정안과 같이 수업시간 등에 학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확성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의 규제를 보시면—박스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 박스 내용인데요—금지통고 규정과 소음 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행 집시법 제8조제5항제2호는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행법 제14조의 소음 규제를 보시면 집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에 대한 시간대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권·김소희 의원안은 위반 시에 사용 중지 명령과 일시보관 그리고 또 명령 위반이나 필요한 조치 거부·방해한 경우에 처벌조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의원안 8조 5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8조제5항제2호에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을 보시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환경의 평온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이성권 의원안 제8조제5항제2호는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요건에 학습권 외에 교육환경을 추가하고 있는데, 학습권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교육환경은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의미하며, 학습 외에 보건·위생, 안전 등의 외부 환경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해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확성기 사용 제한을 수업시간으로 한정한 점은 학습권 보호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장소적 범위 예외 규정을 규정할지 여부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회·시위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하겠어요? 특히 예를 들면 김소희 의원안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다 포함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고 이성권 의원안은 초중고 다 되는데, 사실 이 주변에 초중고가 없는 데가 있나요?

○이상식 위원 이성권 안의 ‘주변 지역’이라는 말이 좀 불확정적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몇 m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가 주변인지 주변이 아닌지? 없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지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것은 불확정 개념이고, 김소희 의원안 200m는 우리나라에서 도심지의 200m 반경에 학교 없는 장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서범수 결국 집회·시위 이것은 주말에만 하라는 소리네요, 수업 없는 시간에. 그렇지요?

○이상식 위원 지금은 학교 앞에서도 할 수 있는데 데시벨의 제한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주간·야간 이렇게.

○이상식 위원 주간·야간 해 가지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취지는 공감은 하는데요. 학교의 교육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회·시위 자유가 너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김성희 위원 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류의 법안이 구성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인 연합회에서 일요일 예배 시간에 교회 근처에서 혹은 사찰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은 시끄럽지 않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법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교육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세력이 애들 수업을 방해해 가면서 그 근처를 계속 시끄럽게 굴면 그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서 그것을 못 하게,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못 하게 할 문제인 거지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식으로 다 규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저는 반대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이상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에 방첩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5년 11월 26일에 소위 논의가 있었는데요. 방첩활동을 경찰법에 명시할 경우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존 직무와의 구분이 어려워서 권한 중복 및 기관 간 혼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국방부 등과 역할 정립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이미 방첩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 명시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아울러 방첩활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 만큼 절차·대상·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이와 함께 적국 개념을 포함한 방첩활동의 범위와 법제화 필요성, 구체적 시행체계에 대해 경찰청 측의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이 의견을 제출해 왔는데요. 방첩은 외국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첩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이 현재도 사실상 수행할 수 있고 국정원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데 이견은 없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 간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직법상의 방첩활동 근거 마련과 연계하여 경찰법상 경찰 임무에도 방첩활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방첩이라 하면 뭡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까? 방첩의 의미. ‘방첩’ 하면 뭡니까?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경찰청 방첩수사과장입니다.

사전적 의미로서는 ‘막을 방’ 또 ‘염탐할 첩’ 해서요 외국의 정보활동을 막는다, 이에 대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적국의 간첩·파괴 행위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국’이란?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적국의 개념은 대한민국 실정법이나 대법원 판례상 지금까지 적국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존재는 저희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로서 그리고 또 국가나 정부에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첩이란 뭐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방첩은 뭡냐고. 여기에 나와 있네,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적국이 아닌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간단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명확하게 하려고……

○양부남 위원 이 조항이 없으면 지금 방첩활동 못 하는가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현재도 저희가 국정원의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직무수행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경직법에 방첩을 저희 직무의 하나로 명시한다는 점 그리고 또 명시함으로 인해서 경직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직무의 한계 또 소송에 관련한 혜택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요 보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 등 여러 가지 일반 규정들이 같이 정리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잖아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이 방첩이라는 개념의 대상이 되는 정보활동은요 위원님……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고 수사의 범위에는 정보수집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방활동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에 방첩활동을 안 넣어 봐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 외에도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양부남 위원 이 조항을 넣든 안 넣든 기본권 보장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으

로?

지금도 방첩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으면서 방첩활동의 절차와 이런 게 달라지나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기본권의 절차까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부남 위원** 그러면 달라질 게 없잖아요? 국민의 기본권도.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예.

○**양부남 위원** 저는 이 조항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가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고 수사의 범위는 첩보활동, 예방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넣음으로써 뭐가 달라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식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사활동에 방첩활동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첩활동과 수사활동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활동은, 경찰 작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심각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경호·교통 이런 게 죽 나열이 되는데, 아마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온 지 2년 됐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방첩활동의 주무기관으로 된 거지요.

그렇다면 방첩활동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 가지고 우리 임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다가 또 보상 같은 실무적인 그런 문제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마 방첩을 추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정원은 지금 다른 의견 없지요?

○**경찰청방첩수사과장 황영선**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수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최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것도 추가됐잖아요, 대북 전단 관련된 그 업무가 추가됐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행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런 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 규정이 없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시고 하면서 대북에 전단을 날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작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법 집행에 수긍을 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경찰 작용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뭐냐 하면 방첩활동이 경찰의 기본 업무인데 여기에 빠져 버리면 오히려 기본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 위원님이 양해를 좀……

○**양부남 위원**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이 법에 방첩활동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양부남 위원 넣을 때와 안 넣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식 위원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라고 하는 이것하고도 약간 뉘앙스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반대하고 찬성하느냐는 차원 이전 문제로 이러한 규정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을 때의 현실적인 차이가 뭐냐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6페이지입니다.

경찰관의 방첩활동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첩활동의 정의를 방첩활동을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으로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절차 측면에서 ‘경찰관 방첩활동의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 방첩활동의 대상과 관련해서 방첩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의 범위와 처리 기준, 대응활동의 종류·절차·한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첩활동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방첩활동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방첩활동에 대한 약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방첩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첩활동의 약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청에서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약칭 추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다번, 9페이지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등의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대응활동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

지·건물·배·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그 밑에 관련 법률 조항 박스의 내용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는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해서 위험한 사태가 있는 때에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때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11페이지의 7조를 보시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그런 제5조 1항·2항 및 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의 근거 조항으로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방첩활동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하는 위험한 사태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다만 개정안 5조의2에 따른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가 임박한 경우에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및 6조에 따라 이미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 방첩활동을 별도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방첩활동 과정에서 위험한 사태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미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이 있지만 워낙 방첩활동이 국민의 권익·권리·의무하고…… 방첩활동이 더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별도의 조항을 하나 더 뒤 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라는, 행정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가외성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2페이지, 라변입니다.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방첩활동의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을 보시면 3호에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방첩활동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방첩활동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고 경찰청의 방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호에 규정된 테러범죄와 비교할 때 방첩활동은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할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에 동의하고 전문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경직법 시행령상에 포상금 지급은 고시로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여기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외부 유출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경찰에서도 이것을 수사하는 기구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런 행위를 국가기관에, 경찰에 제보했을 때 범인을 검거하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양부남 위원 지금 경찰관에게도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이 조항에 의하면? 방첩활동 포상금을 민간인만……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신고 포상금은……

○양부남 위원 여기 말하는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여기에는 경찰관이 해당 안 됩니까, 방첩활동을 수행한 경찰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경찰관……

○양부남 위원 그런데 경찰관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런데 이 포상금은 경찰관에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 조항을 보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을 꼭 보니까……

○양부남 위원 그러면 방첩활동을 열심히 한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은 없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 규정에 의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보상은 하지만 이 법 조문에 의해서 주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조항상으로 불분명한데, 조항 해석상. 발의하신 간사님하고 이상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뭘 염두에 두셨습니까?

○이상식 위원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관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국가기밀을 가령 가상의 외국에 팔아넘겼을 경우에 그 사실을 제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찰관보다는 민간인들이 훨씬 많지요.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항이 약간……

○소위원장 서범수 지금 경찰관들한테 포상 주는 거는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른 걸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어떤 걸로 줍니까, 근거를?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 적극행정 포상금이 있어서 적극행정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적극행정.

○이상식 위원 이것 범인 검거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것은 원래 범인 신고해서 경찰관이 검거하게끔 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그런 제보를 하고, 경찰관들도 내부 첩보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련 첩보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포상을 줍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 조항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지는 않고 적극행정 포상금으로 해서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한테 주는 돈은.

○이상식 위원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경찰관이 아닌 시민들 대상이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경찰관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관련 경찰관에게 줄 수 있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적극행정으로 주기에는, 행정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상식 위원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름 자체가……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요구하는 게…… 하기가 경찰관들 포상 얼마 주는 것보다는 특진시키는 게 낫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특진으로 해결하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임된 대통령령의 제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법, 다음 소위자료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15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이상식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법에 경찰의 임무는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임무를 추가하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것은 국가경찰 업무에 집어넣는다는 거지요, 방첩활동을?

○전문위원 나아정 예.

○이상식 위원 내용은 똑같고?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의 임무 자체를 경찰법에 하나 집어넣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겠다 이 이야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인데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양 법률의 적용 시점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 6개월 경과 후로 하면 맞습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양부남 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이상식 위원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식사 약속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건만 하고 해요.

○소위원장 서범수 이 건만 할까요?

○박덕흠 위원 이 건만 하고.

○소위원장 서범수 이 건만 합시다.

○박덕흠 위원 간단하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이 건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공무원법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임기제는 도입되었는데 연령정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임기 중에 연령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임기 중 정년 도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청·중수청과 같이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일정 연령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청장대행은 관계인이라서 지금 자리에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부남 위원 발언을 안 했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청장님……

○권철승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공직기관장들의 경우하고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 좀 박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총장 65세, 조금 더……

○박덕흠 위원 검찰하고 다 같더라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더라고요.

○권철승 위원 그러면 기관장의 임기, 할 수 있는 나이를 올리든가 그렇게 체계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긴 봐야 돼, 전체적으로. 나중에 검찰총장이든지 경찰청장 쪽 이것을 전체로 보긴 봐야 됩니다.

○권철승 위원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임기 전에 정년퇴임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권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다른 기관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체계가 안 맞는 게 있는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던데, 문제없다고.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인데……

○소위원장 서범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권철승 위원 체계가 안 맞으면 조금 이상하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은 맞습니다. 각 기관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권철승 위원 이것은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지침을 마련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 정리되면 지금 누가 혜택을 받아요? 대행도 혜택받고 국수본 부장도 혜택받지요?

○박덕흠 위원 앞으로도 혜택 보는 거지.

○소위원장 서범수 청장 되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되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청원경찰법 전용기·모경중·박균택 의원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경중 의원안 1번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모경중 의원안 두 번째 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박균택 의원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용기·모경중·박균택 의원안 같은 경우 보수승급 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보수승급 기간을 단축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경감급 보수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5년 미만에서 6년 미만으로, 15년 이상 23년 미만에서 6년 이상 13년 미만으로,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13년 이상 21년 미만으로, 30년 이상은 2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30년 이상의 경우에 모경중·박균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경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은 민간 신분임에도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정된 경비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및 위험도가 경찰공무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의 관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가재정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채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방호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경중 의원안은 이에 덧붙여서 직무수행 중 공적이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 보수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원주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 대하여 보수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1300여 개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형태와 직무여건이 다양하고 배치시설별 운영예산 또한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현저한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우대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청원경찰은 단일 경비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동일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재정경제부 의견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임의채용과 승진시험의 부재 등등 해 봤는데 제가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10년 전에는 공무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불렀지요—그때 전수조사를 의원실 보좌관 때 해 봤는데 전체 노동자의, 그러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시험 보고 들어온 9급보다 어떻게 비정규직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특히 관료들은 무슨 생각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시험을 합격 못 한 사람은 돈을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기본부터 되게 이상한 겁니다. 해당 직무가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월급을 더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들어온 경로가, 애는 공무원시험 합격했으니까 일단 많이 주면 돼, 그리고 이 사람 시험도 안 본 사람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씀하시는데 일한 만큼, 이런 일에는 이런 임금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지 시험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 경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똑같이 월급 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경찰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부처 의견을 내는 것은, 특히 재정경제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청원경찰의 보수를 승급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일반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위원 나아정 이 법에서는 일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간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큰 차이가 있는가요? 그러면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만 보수와 승급을 주고 이쪽은 안 할 만한 그런 차별화할 만한 업무의 차별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양부남 위원 나는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을 승급을 시켜 주고 보수 늘리는 것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는 아닌데 다른 소속의 청원경찰과 차별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이렇게 신분제, 승급에 차이를 둘 만한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 말씀대로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청경의 보수등급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법은?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설주도 있을 거잖아. 그렇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 사람들의 청경하고 이 청경하고 자격조건이나 이런 건 같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같지요. 다만 소속이 어디냐의 차이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주가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가 나가는 거고.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공사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의견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은행에도 청경이 있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은행에 소속된 청경들의 봉급 수준은 어때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최저임금으로 해서 순경 임금 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사람들 지금처럼 15년 미만, 15년 이상에서 23년 미만, 23년에서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나눴니까, 등급을?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그쪽은 안 나뉘져 있고요. 순경 이상의 보수를 주도록 돼 있고 거기에 시설주가, 최저 하한선만 규정이 돼 있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연도를 뒤 가지고 경찰에 준해서 월급을 인상해 주도록 그렇게만 법이 개정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경들의 임금 수준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은행이나 다른 시설에 소속된 청경들하고 임금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봤겠지. 자료가 있나요?

말씀하세요, 뒤에.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소관 계장입니다.

9년 차 기준으로 경찰하고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하고 비국지 청원경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보다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국지는 사업장마다 일반 사적 계약에 의해서 봉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국지보다 국지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비국지가 국지보다 높다고?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낮다고.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다만 수력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당이 좀 많아 가지고요. 전체적인 봉급을 따졌을 경우에는 국지 청원경찰보다 많은 사업소도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예, 그런 특수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형평성 문제라고 제기하신 것도 사실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이나 하면 민간이 낮게 받는데 왜 공무원만 높게 주느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낮게 주는 게 문제인 거지 더 주는 것을 옆에 사람이 낮으니까 거기다 끌어내려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얘기는 청원경찰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데 완전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일을 해서 이걸 받는 게 맞고 그것을 법률을 제정하는데 민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공무원이 그렇게 가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청원경찰의 처우가 좋아지면 민간은 노동조합이랑 해서 자기들이 싸워서 저기도 이렇게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달라고 해서 임금을 높이든가 아니면 거꾸로 더 좋은 청원경찰 인력들이 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건 최소한 국가직 혹은 국가에서 고용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경찰이랑 비교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비교했을 때 이 개정안만큼 올려 주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민간은 민간대

로 알아서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 때문에 여기를 못 하고 하고를 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청원경찰이 채용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경우와 사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해서 갑니까?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본인이 지원해서 시설주가 채용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채용할 때, 처음에 갈 때부터 본인은 희망해서 가는 거네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본인이 그쪽으로.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희망해서 갔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과 꼭 비교할 바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선택했으니까.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소위원장 서범수 만약에 전용기 의원안처럼 가면 얼마나 더 들어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지금 순경으로 들어와서 6급 경위까지 가는 데 29년인가를 개정안으로 하면 22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한 길로는 방호직 공무원이 있는데 방호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 가는 데 23.5년이 소요되는데 거기하고 봤을 때 지금……

○소위원장 서범수 제 이야기는 돈 말이에요, 돈. 예를 들면 지금 현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나눌 경우하고 지금 전용기 의원안처럼 이렇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돈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1년에 한 71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모경중 의원, 박균택 의원안은 더 많이 들겠네.

○양부남 위원 간사님, 제가 제 의견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기업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본인들의 희망에 의하지 않고 배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계약에 의해서 간 거라면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대해서만 토론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수정해서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에서 신중검토 하자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기간이 한 29년에서 22년으로 7년이 단축됐는데 방호직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급격하게 단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방호직하고 맞춰 가지고 기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아까 김성희 위원님도 말했듯이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높은 데 기준을 가지고 낮은 걸 끌고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청경이 경찰관의 98%?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소위원장 서범수 98% 정도 받는다고 그래서 ‘안 돼, 우리 경찰관보다는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그 논리보다는 청경 올려 놓고 ‘청경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는 더 받자’ 그런 논리를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청경하고 경찰하고, 청경 같은 경우는 근무지 내에서 경찰관

직무를 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비교할 건 아닌데……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업무 자체, 업무 난이도랄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체제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 경찰이 하는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청경들이? 그렇다면 여기 전용기 의원안, 모경중·박균택 의원안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경찰에서 전향적으로 지금보다는 개선된 안, 그러면서 경찰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냥 없던 걸로 할 게 아니고. 소요된 연수라든지 계급을 지금 발의된 안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청원경찰들의 일하는 것,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 또 경찰 입장도 반영하는 어떤 수정된 조정안을 경찰에서 의견을 냈으면 하는 게, 그것은 할 수 없는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저희들은 방호직 공무원하고 청경하고 업무가 좀 비슷하게, 방호직도 방호직 소속돼 있는 그 부서에서만 경비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유사해서 방호직하고 연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이 방호직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기간은 승진 연도가 5.5년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1.5년이 더 감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만 맞추면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희 위원 결론은 7년을 5.5년으로 하자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수용 가능하냐?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말씀.

○양부남 위원 최소한 방호직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이. 지금 방호직보다는 불리한 처우라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양부남 위원 청원경찰이 방호직보다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합리적 이유가.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그래서 그 정도로 맞추면 좀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청경이 지금 경찰의 지도·감독을 받지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안 해 봤나요, 청경하고 경찰청하고?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소관 계장입니다.

국가·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에는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총 5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경찰청이랑 1년에 한두 번씩은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처우 개선하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비국지 청원경찰하고 그리고 유사 직종인 방호직 공무원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급격한 단

축보다는 좀 적정한, 단축 폭을 조금 완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경찰이 그걸 나중에 만들어 낼 수 있나요, 같이 의논을 해서?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기재부는 눈치 보고 국회는 눈치를 안 본다 이거지.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동선 저희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렇시다. 전부 다들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너무 급격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절충안을 하나 만들어 오세요.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방호직 수준으로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충안을 하나 만들어 오시면 그걸 가지고 다음 기회에 심의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경찰청경비국장 고범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다음, 나.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경비구역 외 직무 허용 특례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와 경비구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위협 증가로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 한시적 경비 수요, 중요 재산의 호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한정된 인력 여건하에서 직무 범위만을 확대할 경우 본연의 업무인 시설 방호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했던 내용은 200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직무 범위를 한정된 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왜 신중하게 검토를……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것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니까? 특히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직무에,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일단 청경이 경찰처럼 인원이 많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설 경비하는 데 쓰는 대부분의, 한 83% 이상의 청경을 운용하는 시설이 1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 외에 다른 데에 쓰기에도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시설주가 운영을 하면서 청경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그랬던 게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2010년도 법 개정할 때 본 경비구역 내에서의 경비업무에만 한정하도록 법을 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이건 해당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겠는 게, 해당 의원은 어쨌든 청원경찰이 범위를 넓게 활동하는 게 청원경찰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셨을 텐데 지금 경찰의 반대 이유는 그렇게 해 놓으면 고용주가 이상한 데 데려다가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니 청원경찰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저도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조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게 과연 청경이 원하는 건지 사업주가 원하는 건지…… 이것 사업주가 원하는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맞습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것,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도 청경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여기 지적이 돼 있지만 과거 청경이 주정차 단속한다든지 골재 불법 채취 감시하라든지 청경의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시킬 수 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이 조항은 발의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들어야 저희들이 발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청원주의 이익을 위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양부남 위원** 옛날에 검찰청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옛날에 경찰에서도 청원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고 현실적으로 압수수색 나갈 때 동원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법이 허용된다면 청원주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청원경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청원경찰이 보충돼야 될 만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만한 인력 소요가 있으면 청원주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합리적이지 편법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의한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전문위원 나아정 13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대외직명 사용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제도에는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지휘체계의 혼선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직기간에 따른 대외직명을 도입해서 조직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감독자의 지정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무 인원에 따라 감독자를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외직명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명확한 대외직명 부여는 실무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직무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규칙에 따라 조장, 반장, 대장 등 감독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근로자 신분인 청원경찰에게 공무원 직급체계와 유사한 대외직명을 법령상 신설할 경우 신분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이견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예를 들면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외직명을 만들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맞습니다. 경찰관처럼 계급체계를 두자.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예를 들어 경찰 입장에서 보면 10명 이하가 거의 79%인데 그 10명을 또 나눠서, 몇 명 안 되는 것을 나눠서 대외직명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내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법에 하는 것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 보수승급 관련하고 그 기간을 맞춰서 같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하자고, 이것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조형물 등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역사적 정서를 고려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명확성 및 규율 범위의 적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개정안의 내용 중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에 욕일기가 포함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 및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의 범위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상징물에 한정되는지 또는 제국주의 정부기관의 상징물까지 포함하는지 등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과 같이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 개인의 주거 공간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입법 목적 달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징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사적 영역에서의 표현행위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규율 범위의 적정성 및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욕일기 이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가…… 자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은 뭐랄까요, 시민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법으로 규율한다?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이 뭔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그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자체로 어떤 선언적인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그 정신을 담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 이 규정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는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있지만 이러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

지 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행위의 주체자를 한정해서 토론하면 어떻겠는가. 개인이 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니까 우리가 넘어가도 되지만 공적 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는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친일 사상에 경도돼서 이러한 짓을 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또 공공기관, 공기업, 국민 세금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바뀌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말씀……

경찰청 입장은 어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검토의견을 보면……

○이상식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 글썄요, 저도 누구보다도 이런 생각이 강하지만 이런 것을 법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비판하거나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정부…… 그러니까 양부남 위원 안은 저는 합리적인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욕일기만 하면 나치 이런 것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부남 위원 이 법을 한다면 군사적 상징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적 상징물이 아니라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제국주의의 군사적 상징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정부기관의 상징물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식 위원 그러면 욕일기 말고 다른 것까지 넣어요?

○양부남 위원 예, 천황실 관련 상징 오칠동문 이런 경우까지.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 이 법이 오늘 통과…… 제 생각은 일반 개인이 이러한 표현의 행동을 하는 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주체를 제한하자고 했던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파급효과라든지 그 영향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체를 제한한다면 그 대상의 행위는 상징물을 넘어서서 제국주의 정부의 상징물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외교부의 입장은 어때요, 전문위원님?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간단치 않은 문제 같은데요.

○전문위원 나아정 확인은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법이 경범죄 처벌법이기 때문에 주체를 공공기관이나 국가로 제한하는 문제가 조금……

○이상식 위원 역사 인식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시다. 여기에 대한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욕일기라든지 제국주의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했다가 경찰청에서 외교부하고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 의견도 물어보고요. 사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저희들이 외교부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깃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받기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1페이지, 경비업법 이광희 의원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안은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도급계약 체결 시 원가 산정의 기준 명시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60세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제도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당시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만 58세 이상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제도 도입 전에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은 청원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경비업법이 개정되어서 특수경비원의 상한 연령이 60세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연장 및 일반 경비원의 연령 상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경비원이 60세 이상이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일반 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참고로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서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으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격사유로 연령 상한을 삭제하기보다는 연령 상한을 65세 등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65세 상향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65세로 상향한다, 65세까지 한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상한으로.

○양부남 위원 65세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식 위원 팬찮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부남 위원 제 나이가 65세인데 충분히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음, 나항.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경비업법 제15조제3항은 특수경비원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2001년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항이 도입된 이유는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15조 제3항 단서에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특수경비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수경비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쟁의행위를 허용하면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중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출입·보안관리 업무는 전기사업의 전력거래 부문 중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출입·보안관리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 외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와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무 중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의 공공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재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법 제15조제3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5인의 위헌의견, 4인의 기각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특수경비원의 업무 성격 그리고 필수유지업무의 모호성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방위산업 종사자의 쟁의행위도 금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제 생각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업무가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경찰청 의견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걸로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전문위원 나아정 11페이지, 다번입니다.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수경비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고려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요청과 관련하여서 개정안 제25조제2항을 통해서 시·도경찰청이 특수경비원의 근무조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보수 등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경비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유사업법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시 원가 산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제3항에서는 원가 산정 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수경비원은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어서 단순노무종사자와 분류가 다른 점을 원가 산정 시 반영하여 유사한 직업군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3페이지의 참고를 봐 주시면,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의 경비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상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특수경비원이 통계청 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데 노임단가 관련 규정에서는 별도 구분 없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이 적용되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2페이지의 ‘또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개정안 25조 제3항에서 원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은 특수경비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경비업자와 특수경비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근로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임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3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계약의 원가 산정을 고려해

야 한다는 조항은 경비업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25조 3항의 내용이 공공기관과 특수경비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따라 경비업자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비업자의 의무조항보다는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앞쪽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자구 측면에서 공공기관과 경비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개정안 25조 제3항의 '위탁'을 '도급계약의 체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경찰청 권한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수 수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경찰청에서 하고,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도·점검 실시 의무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시·도경찰청장에게 보수 관련해서 지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소위원장 서범수 의무를 부과해서 그 이후 조치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원래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한이고 경찰청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중규제 형태가 또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그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 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비업체 또 경비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용 또 교육, 무기 관련, 임무, 장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지도·점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수 또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책임을 경찰이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경찰의 의견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주체를 법률 바꿔야 되겠네요, 노동부장관이 하는 걸로?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은, 원가 개선 이런 것은 노동부장관이 하고 경찰청은 근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 취지 같은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예, 그렇지요.

법 조항은 보면, 이광희 의원안에 보면 '특수경비원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근로조건 등 처우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특수경비원의 처

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방호 업무를 특수경비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걸 당연한 소리인데?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3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당연히 공공기관이 계약할 때는 이 조항들을 다 참고하는 거라서 굳이 그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2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현장에 사실 경비업체 관리·감독, 무기 관리, 교육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경찰청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도·점검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이 업무까지 이렇게 부과된다면……

○**소위원장 서범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할 수는 있으나 보수라든지 기타 복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다?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예, 경비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무기 관리, 교육 이런 부분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량은 상당히 큼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라.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라번, 15페이지입니다.

특수경비업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3항은 특수경비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경비업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특수경비업자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경비업자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지금 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보다 완화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 6개월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 25조 2항이나 26조 4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비업법 가항은 특수경비원의 정년 연령을 65세까지 하는 걸로, 그다음에 나항 노동쟁의 근거는 보류하는 걸로, 다항 특수경비원 근로조건에 대한 것도 보류, 라항 특수경비업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은 수용하는 걸로 하고 부칙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 마지막이지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이게 지금 제정법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제정법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빨리하긴 해야 되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시급한 법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공청회는 해야 되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지요? 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이걸 러프하게 한번 쭉 훑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고 공청회 날짜 정하고 오늘 이거를 마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안이기에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고요. 총괄검토 사항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다중피해사기 개념 도입의 필요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가해자 1인의 피해자 1인에 대한 사기범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5년 보이스피싱은 2만 3360건이 발생하여 1조 257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것에 비해서 피해 환급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3년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현황에 따르면 특정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1만 5437건, 2278억 1200만 원에 달했지만 범죄 피해 환급액이 32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범행을 시도하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가 해당 전화 등을 받더라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도록 하며 범인들이 범행 이용계좌

로 자금을 이체받더라도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과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개 조항,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와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통신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및 가상자산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금융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이체, 계좌의 송금 또는 출금을 30일의 범위에서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 확인 시 금융회사에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률 조항과의 비교를 보시면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총칙은 넘어가고 경찰청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정안에서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을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한 경우에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는 긴급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제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청장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서비스 확인 시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예방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예방조치를 요

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긴급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일시정지를 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제정안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사기관의 장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출금 차단 요청을 하는 내용이 이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서 경찰청 등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실행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화 등이 국민에게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기범죄 이용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2011년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보이스피싱 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고 또 피해금을 회복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현행 법률 규정, 다시 말해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있고 정무위원회에 현재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 법률과의 관계를 조정해서 제정안의 내용을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중피해사기의 범행 요건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상의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과 차이가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제정안의 경우에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경찰청장이나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은행이 공동으로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좌를 동결하는 반사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경찰, 통신사, 금융기관이 실시간 협업해서 의심 전화 및 계좌를 일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사기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기범죄 통합신고 및 정보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 정도 하고.

경찰청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딱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법을 굳이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우리 통합대응단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환급법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법은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예방 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게 가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또 하나가 있잖아요.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그리고 지급정지 관련……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요, 범행 대상, 범죄 대상.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환급법은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둔 법이고 그 법에서는 신종 피싱, 신종 피싱이 최근에 투자리딩, 로맨스스캠 그리고 팀미션 등 4종 세트가 있는데요. 이 법은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재화나 용역을 빙자한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 또……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보이스피싱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리딩의 일부.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지금 현재 로맨스스캠이라든지……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그거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타깃으로 하는 게 뭐예요?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기존의 기관 사칭형에도 지금 긴급차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범죄 대상 중에……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중에는 주로 투자리딩, 로맨스스캠 그리고 팀미션이 주가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앞으로 새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는 거지요?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예, 이 4종에 대한 범죄 피해금도 작년 한 해 추산해 보면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공청회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대행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의사일정 제23항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전에 논의한 음주운전 방조행위 규정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오전 논의에서 방조행위의 각 호에서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박정현·조승환 의원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자구 수정을 했는데요. 경찰청과 얘기했을 때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해서 동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고친 거는 3호를 삭제하고?

○전문위원 나아정 3호를 없애고 4호를 3호로 하면서……

○소위원장 서범수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양부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은 어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행님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방 다 들어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4)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9)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3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3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15시14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2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주영국 소방청 차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119대응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소방청 소관 4개 법률, 8개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감리 중에 소방시설공사만 원칙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원칙적 분리발주 대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리도급의 예외를 시행령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분리도급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소방감리 부문에 한해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설계와 소방공사감리도 원칙적 분리발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설계 또는 감리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같이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소방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입찰 기회를 부여해서 공정 경쟁을 통한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고 소방시설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 원칙을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 확보 여부, 하자 책임 명확화 여부, 발주자의 비용 부담 증가 여부, 분리발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발주와 관련된 찬반 논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분리발주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분리발주하는 경우에 설계자 종합조정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축물 설계·감리의 정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 공정 간 협의·조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또 분리도급 시 업무 중복·누락 등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설계 변경·현장 반영 지연 및 재시공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도면 적합성 재확인 등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분리도급 시 업역 간 갈등 및 조정 비용이 증가한다. 또 스마트 인프라 등 융복합 사업 추진 저해 가능성이 있다. 또 해외공사 같은 경우에 EPC(설계·조달·시공 일괄발주) 방식이 일반적인데 분리도급 도입 시에 해외 입찰에 참여할 때 경쟁력 약화 및 수주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계·감리 분리발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에서는 품질 저하는 발주방식이 아니라 협의 체계 운영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적 협의·조정회의 운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또 현행 성능 위주 설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방공사감리 분리도급 제도 하에서 품질 저하 사례가 없다는 찬성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리도급은 발주방식의 조정일 뿐이며 전문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설계·감리 오류 감소가 가능하다. 또 겸업업체의 구조 개선으로 공정 경쟁 유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순수 소방 설계·감리 전문업체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전문성 강화로 품질 제고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될 것이다. 소방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해외 발주 방식의 경우에도 국가별 제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분리도급을 통해 기술역량 강화 및 전문업체의 해외시장 직접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국내 소방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관계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청은 찬성하는 의견이고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조달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부터 소방청의 찬성 의견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신중 의견, 재정부의 신중 의견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방시설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라는 의견, 소방 설계·감리 분리발주에 부작용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서도 소방 설계·감리는 건축설계·감리와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고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건축물의 설계자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고 이견 발생 시에 업무 지연, 정합되지 않은 설계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고 건축설계와 소방설계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할 경우에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또 현재 시행령에서도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건설공사의 경우도 감리의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감리비용 증가에 따른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의 분양가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과도한 쪼개기로 예산 증가가 우려되고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공사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설계·감리까지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청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분리발주 시 비용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최근 공공다중이용시설물, 학교, 도서관, 전시관 등의 경우에 비정형화된 구조 등 다양한 평면을 가진 형태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기술자가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사와 건축주와 함께 참여하여 화재 발생 시물레이션을 통해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공공 안전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통합발주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안 제21조제2항 단서 이하의 공사에 대한 법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소방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 통합발주로 인해서 순수 소방 설계·감리업자들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 때문에 입찰 참가 기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도급을 통해서 소방 설계·감리업자들의 기술역량도 강화를 시키고 또 전문성 또 품질 향상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리도급을 통해서, 지금 현행은 통합발주이기 때문에 소방 설계·감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조차 없는데 분리도급을 했을 때는 건설설계나 감리업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 쪽에서는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역량도 강화하면 결국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품질도 향상이 될 것이고 전문성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재정부에서 우려하는 사항 중에, 저희가 시행령에 모든 건축물을 다 분리도급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연면적 2000㎡ 이하인 소규모 소방 설계·감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하고요. 또 재정부에서도

의견을 내 주신 기본 실시설계에서 기술제안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리도급의 예외를 뒤서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님.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국토부 건설국장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김석기 국장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소방 관련된 설계만 따로 하고 감리도 따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지금 전기 같은 것도 따로 하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전기도 설계, 시공, 감리를 다 분리도급 하고 있고요.

○권철승 위원 전기는 그게 오래 됐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도 설계는 같이하고 있고요. 시공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권철승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지금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분리발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위원님,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20년 6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22년도에 전력산업기술법이 개정이 돼서 전기 같은 경우는 설계·감리가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경에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양쪽의 의견이 다르네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23년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권철승 위원 그게 의무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원칙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예외 사항을 시행령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려했던 부분들의 발생이 안 됐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권철승 위원 이거는 건설현장 일을 안 해 보면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국토부의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이 분야는 시공이 아니라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공의 경우에도 안전이나 하자 관련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는데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구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기에 관한 부분 또 소방이나 관련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리발주가 된다면 설계 정합성의 문제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적용이 어렵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크게 발생을 하고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시공상의 하자를 가려서 책임을 가리는 것도 어려운데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속적인 시공 오류와 하자의 문제가 분리되어서 된다면 차후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계 정합성의 문제가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나누어지게 된다면 건축사의 설계와 또 소방설계를 종합하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는 총괄 조정자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건축사가 건축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건축사는 한 부분만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걸 총괄하는 옥상옥으로 새로운 전문가가, 총괄 조정가가 생겨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절차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 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철승 위원 설계에 들어왔던 업체가, 설계업체가 감리 발주에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천 배제됩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지금 설계업 하시는 분들이 감리업까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러면 설계·감리와 통합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통합 입찰공고하면 한 곳에서 한다는 뜻인데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래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건축설계, 소방시설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방 설계·감리하시는 분들은 건축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방설계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가조차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도급을 통해서 건설설계나 소방설계나 누구든지 다 입찰에는 참가하고 이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역량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제가 실무를 안 해 봐서 현실 감각은 별로 없어서 여쭙보는 건데요. 지금 설계에서 소방시설설계만 별도로 빼서 입찰을 보고 감리도 따로 보고 하면 이런저런 비효율이 발생할 거다, 그게 지금 국토부 입장이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예, 비효율도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소재와……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나중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밝히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사무소 안에는 구조기술팀이라든가 소방안전에 관한 팀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설계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팀은 팀대로 따로 있고 별도의 소방설계 회사가 밖에 있어서 여기랑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이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하고 구조도 이중으로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말씀이잖아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권철승 위원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무슨 제삼의 어떤 권위가 없는 상태고,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제삼의 권위자가 필요한 사항이 생기고 삼사 년의 시공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데 설계 변경마다 서로 간에 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다른 기관이 해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언뜻 듣기에는 저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맞습니다.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요 그러면 건축물의 화재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는 전기하고 소방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설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동일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3년 이후에 전기 분야가 건축설계에서 빠지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전기 설계·감리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소방 설계·감리를 분리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가 전기나 또 다른 부분들이 분리됨에 의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와 고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간담회를 해 보거나 현장소장들과 만나 보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사망사고 건도 전기 감리를 하는 분이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분리된 기관에 소속돼 있고 임금이나 업무 통제를 달리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와 혼선,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사회 문제화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 20만㎡ 또 높이가 100m 이상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능 위주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예시를 제가 들어 드리면 그것도 지금 분리도 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위주설계는 일반 건축설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기술사가 1명이고 이걸 기술사가 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데 성능위주설계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두 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분리도급이 돼서 소방기술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협의·조정하면 다 해결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러니까 발주……

○권철승 위원 잠깐만요. 성능위주 발주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나요? 거기 는 왜 기술사 2명을 붙일 정도로 중요도를 부여합니까? 어떤 일인가요, 주로?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저희 국내 같은 경우도 63빌딩이 최초였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법에서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종 건물들이요. 그럴 때는 연면적 20만㎡라든지 높이가 50층 이상 중에……

○권철승 위원 그러니까 특수 기술이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맞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소방기술이 특수 기술이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그래서 성능위주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 소방설계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래도 소방은 범용기술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가요? 모든 데 들어가는 데……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이게 구조나……

○소위원장 서범수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일단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그리고 소방설계가 따로 있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저희가 소방시설업을 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방시설설계업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방염처리업 그래서 법적으로 4개의 업을……

○소위원장 서범수 제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좀 의문시 됐던 게 처음에 소방업무가 분리발주될 때 왜 공사업무만 발주됐을까. 왜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안 따라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사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때 설계하고 감리는 같이 분리 안 하고 따로, 공사는 어떻게든 설계를 하면 같이 들어가야 되니 공사는 분리발주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설계는 아까 건설정책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요지 때문에 분리발주를 안 시켰다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때 당시 저희가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세 가지를 분리도급하는 법안을 17년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 6월에 시행이 됐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과 똑같이 국토부에서는 저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었고요. 행안부하고 조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전기하고 정보통신이 설계·감리가 분리발주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공사만 분리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안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우려사항들은 정책적인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전기하고 정보통신도 설계·감리가 아직 분리도급이 안 된 상태, 입법 선례가 없기 때문에 소방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이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소방청에서는 지금 전기설계도 분리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방도 당연히 설계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께서는 아니다, 이게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전기설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더 들어 봅시다. 지금 뭐냐 하면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청 이야기대로 전기설계를 분리해서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소방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팩트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오신 분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많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전기설계

가 분리됐을 때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합시다.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을 감독관청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좀 다릅니다. 현장에서 진짜 일을 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게 그 사람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좀 들어 봐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거치고 이 논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김태년·서범수 의원안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를 보시면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또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또 숙박시설 등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과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변경 시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급해서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내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두 번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25년 11월 18일 논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 문제, 건물의 안정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의견, 소방청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 추진 대책 보강 및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 소위 이후에 소방청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개선 대책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낸 건데 몇 번 지금 소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이유인즉슨 건물구조상 소급해서 이걸 공사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꾸 사고가 터져요.

며칠 전에 대전 어디입니까? 안전공업도 그 전의 상황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든지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을 하나 상정을 해서 해 보자 한 건데 소방청에서 제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떤 대책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

요, 이거.

현실적으로 몇십 년 된 건물에 스프링클러 만들고 하는 건 좋다. 구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걸 내가 인정을 한다고요. 하는데 그 이후에 소방이 ‘안 됩니다’라고만 하고 뭔가 좀 더 진전된 대책 같은 것을 안 만들어 와서 내가 사실 올린 거예요. 소방에서 다음 전체회의 하기 전에 한번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과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조치 좀 고민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5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의 법적 근거 구체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주호영·김성희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청은 행정조사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소방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자료조사의 내용으로 소방대상물 및 관계 지역의 위치·구조·용도 등에 관한 사항 또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3번 소방용수시설 현황, 4번 소방시설 현황, 5번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6번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는 5번 사항에서 위험물 및 기타 연소물질에서 리튬이온전지 등이나 적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든 사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2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에 직접 자료조사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소방활동 관련 행정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소방기본법에 상향하여 명시할지 여부 및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조사 항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규범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기술변화가 빠른 분야의 새로운 조사요소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운 단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료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하위 법령에 위임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성희 위원 정보원 화재 때 정보원이 보안시설이라고 들어와서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네이버지도 갖다 붙여 놔서 생겼던 일 아닙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을 보여 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러 오든가 해서 접점을 찾아서 공공기관에서 소방활동을, 조사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자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항목을 하위법령으로 놓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 제16조제3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법에서 빼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6페이지 소방청 수정의견과 개정안을 보시면 일단 소방청에서는 근거만 신설하고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조사할 수 있다 정도로?

김성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희 위원 예. 뭐……

○소위원장 서범수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대전 공업처럼 불법·무단 증축 이것 파악이 됩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불법 증축·개축 관련된 사항들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건물의 구조·용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래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 건물에 대한 현황도는 저희가……

○소위원장 서범수 불법에 대한…… 무단 증축에 대한 부분은 몰라도, 만약에 대전 공업 같은 경우에 ‘설계도 갖고 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무단 증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휴게실로 썼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불이 나면 파일 꺼내서 지도랑 다 들고 현장으로 뛰어가시는 중인 건데 국가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니네 들어와서 확인 못 한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이 현실인 거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반 건물 말고 그런 특정 보안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를 내나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나’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16페이지입니다.

나번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의 법적 근거 구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현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의 규정 중에서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근거로 해서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단체보험에 가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과 서울시, 경기도, 기타 시도의 보험가입 현황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강제처분, 피난명령, 긴급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등 가입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배상보험 등의 적용 범위에서 소방활동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방업무는 그 외에도 소방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 등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용 범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보험자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도 피보험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국가직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도 소방공무원을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수정의견 2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각 호의 내용을 3조 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방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도 포함시키면 범위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지금 전국에 6만 7000 소방공무원하고요. 항공대 소방헬기 조종사·정비사 또 소방정대, 선박항해사·기관사 그리고 소방본부나 일부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 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 지금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이것은 소방청에 소속된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안에 소속됐는데 소방관은 아니고 일반직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조금 오해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불 끄러 간 일반직 자치단체 공무원도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함 안 되네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그것은 포함을……

○소위원장 서범수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래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소방청 소속의 소방관 플러스 비소방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일반직공무원까지,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일반직공무원, 그 이야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시도에도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삼백 몇 명이 된다고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철승 위원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권철승 위원 그러면 지자체 단위로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권철승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단체보험 가입 금액이 다 다릅니다.

○권철승 위원 물론이지요. 그게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지금 1인당 한 1만 6500원 정도 보험금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배상책임으로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권철승 위원 그게 중과실이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다 되는 건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지금 현재로는 적법한 소방활동을 했을 때 하고 있고요. 고의는 안 되고 과실로 인해서……

○권철승 위원 예, 고의는 안 되지요. 과실인 경우에까지 된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저희 현장 필드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소방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사기 진작이 될 것이고요.

○권철승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 효과로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언제쯤부터 이게 가입이 시작됐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2017년도부터……

○권철승 위원 2017년도부터요? 10년 되었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권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수정의견 여기서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도지사인가요, 아니면 국가사무의 책임자로서의 시도지사인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도지사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아까 소방공무원 등이라고 하는 게 일반직공무원은 빠진다고 했잖아요. 소방본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시나 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아니고요. 소방기관, 소방청 또 시도소방본부 또 242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이 용어로 딱 그게 360명으로 한정되나요? 나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재관 위원 360명 더 되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소방관 플러스 소방청 내지는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 소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아닌 공무원, 이 이야기인데.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26페이지, 다음은 부칙입니다.

개정안들은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3개월 경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인정하여 기존 조치의 효력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 어느 안입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김성희 위원님, 주호영 의원안으로 가도 됩니까?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부의장님 말씀이시면 들어야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첨단소방장비 활용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소방장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모경중·윤건영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장비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장비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등의 기본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유사업법례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소방장비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소방장비 구매는 최저가 입찰방식이 중심이 되어서 고위험 재난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정성과 성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구조·구급 등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고성능 장비 도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에 다시 구조전문업체로부터 장비를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품질 저하, 납기 지연 등 계약 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장비 구매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비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대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소방장비 선정 시 성능·호환성·운용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서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장비 구매 절차 및 선정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이제까지 소방은 소방장비 구입하면서 구매의 투명성·효율성도 확보 안 했고 우수장비도 도입 안 했고 이렇잖아요, 지금 거꾸로요. 얼마나 안 했으면 이걸 법에 넣을까, 당연한 소리를. 안 그래요? 이것은 당연한 소리를 지금 법에 넣자는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이것 넣자는 거지요.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고개를 끄덕임)

○소위원장 서범수 고개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고개 끄덕끄덕한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이런 구매 절차나 선정할 때에 시도별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소방청이 이원화돼 있어서 조직이 아마 그런 것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범수 나항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나아정 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무상양여 근거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해외에 소방장비 무상양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해외 무상양여는 물품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해외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제39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소방장비 중에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이라는 목적하에서도 양여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물품의 처분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는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동일 내용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외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법에 따라서 양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시켜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양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문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관계부처 의견에도 동의하고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보완이 됐기는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개발 도상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중의 하나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쓰지도 못하는 것 보낸다는 말이지요. 잘못하면 그게 여기 나오는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여전히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드셔야 된다. 장비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저기 보내도 되는 물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이 확보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걸러 줘야 된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방청이나 19개 시도소방 본부에서 불용 심의 플러스 무상양여 심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심의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라.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방청에서 직접적으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에서 한 번씩 점검해 줘야 됩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전문위원 나아정 8페이지입니다.

다,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운영근거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장비가 고장나거나 불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등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 평상시의 소방장비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해서 긴급구조기관(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때 재난현장에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내용을 보시면 평상시에는 정비와 확인을 소방장비정비센터,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그 밖의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하도록 하고 정비 후 소방기관의 장이 적정 정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평상시가 아닌 재난 발생 시에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긴급 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재난현장에서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이 상주하는 경우 소방차량 등 주요 소방장비 고장 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진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신설되는 3항이 평상시의 정비 내용인 1항과 2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로 3항에 추가하였고요.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소방장비의 긴급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으로 법문을 더 넓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조문은 9페이지를 보시면 54조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인데요. 54조에서 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조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 등의 근거 규정이 49조 그리고 시행령에서 54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용조문을 54조에서 49조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이 소방법 보면서 이상해요. 당연한 소리를 지금 법에 넣는다고. 이 법에 없으면 긴급정비지원단 안 할 거예요? 미치겠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위원장님, 이렇게 이런 점검반을 법적인 명시를……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대전에 안전공업 그런 큰 화재 사고가 난다 칩시다. 거기에 긴급정비지원단은 안 가요? 안 갑니까? 그 계획에 다 포함돼 있을 건데. 그런 걸 지금 법에 넣자고 하는 게 내가…… 이거는 한 큰 사건이 벌어지면 계획서상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들을 지금 법에 넣자는 거야.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대형 재난현장에 이런 정비반 투입이 시도별로 소수의 시도만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서범수 왜 그거를…… 소방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하라고 하면 되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이 수반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적……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도 그러면 소방청하고 자치단체 간의 그것 때문에 이것 만드는 거예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담당 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한선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재난현장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비지원단……

○소위원장 서범수 이게요?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예, 정비지원단이……

○소위원장 서범수 이것 민간을 동원한다고?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소방관들도 포함이기는 하지만 주 인력은 소방산업기술원의 장비 검수나 점검이나 이런 기술적으로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기존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는 정비전문가분들, 차량 제조사나 차량 정비업체로부터 저희가 인력풀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인분들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실 일당 일인당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소방청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할 때 지원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이분들이 오서 가지고 재능 기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소위원장 서범수 알았습니다.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민간인도 동원된다 이거지요, 이것?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예.

○소위원장 서범수 미리 말씀하시지.

(웃음소리)

자, 라.

○전문위원 나아정 12페이지, 용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방기관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소방기관을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기관이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중요하고 대표적인 소방기관을 법률에 예시로 명시해서 수범자가 그 위임대상을 보다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소방장비운용자 부분도 지금 현재 없는 의무소방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의무소방원을 삭제하고 소방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사람들을 소방장비운용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시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마.

○전문위원 나아정 마번, 16페이지입니다.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매각, 관리 전환 무상양여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해당 소방장비를 불용 처분하도록 하고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용 결정 이후에 이를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 전환 또는 양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기관의 장이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 전환 또는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소방장비 처분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를 보시면 소방장비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용처분 이외에 폐기는 소방기관의 장이 하고 매각, 무상 관리 전환, 국내 양여는 소방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법에서 직접 매각, 무상 관리 전환, 국내 양여 같은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의 취지는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매각, 무상 관리 전환 또는 양여 절차를 소방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소방장비 처분 절차의 신속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내부 위임규정을 두어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의 의견이 추가로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소방기관의 장이 실질적으로 매각 등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조달청의 경우에는 현행 물품관리법에 따라서도 소방청 소관 물품의 관리 전환이나 양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별도로 관련 조문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부처 의견에 따라 개정안 삭제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을 못 받겠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못 받겠다 하니 다른 이야기는 못 하는데, 수정안 보면 소방기관의 장이라 하잖아요. 소방기관의 장이 하겠다, 개정안에 보면. 그러면 소방기관의 장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소방기관이라 하면 소방정대, 항공구조구급대, 119 구급센터 이런 것 다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조달청장에게 처분 요청을 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개정안을 보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구조구급대 대장이 헬기 팔아도 되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그래서 그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소방장비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위가 소방서장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지, 그것은 소방청에서 나온 분이 하는…… 만약에 개정안으로 소방기관의 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방기관이 있는데 그 장은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건 지금 철회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방기관의 장이라 하면 저 지역센터장도 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서장 이상부터 합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22페이지 바번입니다. 첨단소방장비 지정 및 활용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소방장비 구매 및 연구개발 관련 문제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잡성과 대형화가 심화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 필요한 소방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동시에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설명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소방장비는 우리나라의 재난현장에 바로 투입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방 기술개발 성과물 역시 재난현장에 즉시 투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를 소방 재난현장에서 실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신기술 기반 신규 장비 또는 기존 소방장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보완한 장비가 개발될 경우 이를 소규모로 선행 구매하여 우리나라의 재난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또 검증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보완하고 그 후에 대규모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도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법안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방장비의 대규모 도입에 앞서서 해당 장비의 성능평가와 시범운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난현장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필요시 보완과 추가 연구개발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기반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첨단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한 국민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내용을 보시면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소방장비 중 소방청장이 지정한 것을 첨단소방장비로 정의하고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0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8호에서 ‘첨단 소방장비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소방장비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첨단소방장비 용어는 안 40조부터 46조까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안 2조제8호와 동일한 내용이 안 40조제1항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 기준 및 현행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첨단소방장비의 정의를 안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안 제2조제8호는 삭제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또 40조를 보시면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은 첨단소방장비 지정 이후에 성능평가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인데 정의 규정에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소방장비라고 규정함으로써 시간상 선후관계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40조의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40조 2항의 규정은 첨단소방장비로 지정 시 내용연수 설정 면제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첨단소방장비 지정 기간은 중요 사항이고 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항 ‘첨단소방장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소방장비의 지정과 관련해서 소방장비의 대상, 기준, 심사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뿐만 아니라 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2항을 신설해서 첨단소방장비의 해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 취소와 해지 절차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첨단소방장비 유효기간 3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3년 동안, 구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되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첨단소방장비로……

○양부남 위원 내용연수가 면제된다는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닌가?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내용연수 자체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에서 면제가 되고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첨단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니까 3년까지 첨단으로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면제 특례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 주고 다시 한번 지정이 되면 또다시 3년이 연장이 돼서 6년까지만 되는데……

○양부남 위원 그 이후에 생산되는 것은?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그 이후에 생산되는 것은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대량으로, 소량 구매해 가지고 선행 구매하고 특례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규격화 해서 이미 도입이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예.

○양부남 위원 대량 생산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대량 구매.

○양부남 위원 구매.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예, 서에서 구입차를 산다거나……

○양부남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내용연수가 부여되는가요?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설정이 되지요.

○양부남 위원 설정이 된다.

○소방청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예, 설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첨단소방장비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하지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지정하겠지.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구매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장비분류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고요. 또 내용연수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좀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예를 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다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것 때문에 장비 지정하는 거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 3년이고 플러스 3년 정도. 그것 지나면 그런 특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하나만, 이것하고 관계없이 2026년 R&D 사업이 50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300억이야. 작년에 R&D 사업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과물이 뭔지, 올해 500억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난 국감에서 얘기했지만 이것 차장직대님 신경 써야 됩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난번에도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지만 수천억을 들여 놓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적용되는 기술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몰라, 보고서나 만들고.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33페이지 첨단소방장비 제도의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에 따라서 첨단소방장비로 지정이 된 경우에 그 이후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구매 특례와 성능평가, 시범운영,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그리고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소방장비로 지정이 되어서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할 때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소방장비 구매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첨단소방장비 구매 시에는 8조 1항의 소방장비 분류 및 27조의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능평가에 있어서 첨단소방장비에 대해서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용성 확인을 위하여 소방기관을 통하여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첨단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또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서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첨단소방장비 구매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속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시범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기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제28조 2항의 상당한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첨단소방장비 구매 절차 특례 관련해서 개정안 42조는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된 장비에 대해서 현행법 제18조부터 2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소방장비 구매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첨단소방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구매 절차 특례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연수와 물품분류번호를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

고요. 그 필요 사유와 실제 운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 42조 1항에서 첨단소방장비 구매 절차를 일반 소방장비 구매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2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 배제하는 조문을 적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내용에 대해서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만 준용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할 때는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구매 절차를 규정한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제이론에 따른 준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서 ‘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40페이지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해서 조문의 제목을 구매 특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42조제3항 본문은 면책의 범위를 해당 장비의 구매·운용으로 인해서 소속기관에 발생한 손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 대상을 이에 맞추어서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2조제3항 본문은 손해 발생 시 내부관계에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안 제42조제3항 단서는 손해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타인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율 대상과 책임의 내용이 다르고 첨단소방장비를 구매·관리·운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연히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안 제42조제3항 단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소방청장이 지정하여야 첨단소방장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제43조의 법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3항을 보시면 ‘시범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기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제28조제2항의 상당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 법 제28조 2항에서도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해서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의 44조 제3항은 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45조에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업무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한 국제교류·협력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4개의 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사·연구,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공동개발연구 등입니다.

해석상 첨단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이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포함한 모든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이라는 소방청의 의견을 고려해서 동 조문을 제10장이 아닌 보칙과 관련한 장으로 이동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소방청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47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6개월.

소방청 말씀하십시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주영국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십시오. 저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

요. 조금이라도 좀 하고.

4시 50분부터 할까요?

○양부남 위원 휴식 없이 합시다.

○소위원장 서범수 지쳐서 안 됩니다.

○이재관 위원 5시까지.

○소위원장 서범수 5시까지 할까요?

○이재관 위원 예, 당겨서.

○박정현 위원 아, 바로 해서 5시까지?

○이재관 위원 그냥 바로 해서.

○양부남 위원 바로 합시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성평등가족위에 잠시 가 봐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서범수 4시 5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3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3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9)

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0)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0)

(16시53분)

○소위원장 서범수 의사일정 제32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본부장입니다.

항상 업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좋은 의견들도 저희가 법 개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급경사지법 윤건영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붕괴위험지역, 계측업, 상시계측관리 등 현행법상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거나 신설하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추가하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의제되는 인허가 대상에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서를 포함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스의 주요 내용 요약을 보시면요 붕괴위험지역의 정의를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구체화하였고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현행은—3페이지 보시면 법 제2조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부터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계측업의 정의를 수정하였는데요 상시계측업에서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상시계측관리의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하였는데요. 3페이지 참고를 보시면 현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사항이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개발행위의 허가나 도로 점용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를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명확한 현행법상 용어 정의를 보완하는 등 법률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의 제2조 5호를 보시면 모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를 추가하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모두 포함되게 되는데 현행법상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작고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리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범위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육기관과 학교에 대한 개정안에, 자번에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부처 협의된 내용,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사도가 34도 이상, 높이가 5m 이상인 데를 급경사지라 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인공 사면하고 자연 사면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공 사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34도 이상, 5m.

여기에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을 학교, 교육기관도 지금 포함시키자 이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 조사에서 학교 인근에 있는 게 한 100여 개, 그런 관리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양부남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서범수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사립학교는 뺀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립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양부남 위원 사립학교 주변에 있는 급경사지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0페이지입니다.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 성능검사 근거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해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계측업자가 계측기기에 대해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고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현행법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해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주체를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면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행정규칙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업무에 사용하는 계측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측기기가 많네요. 기본적인 게 열 가지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정확히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 10개 정도, 지반 변위, 지반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변위가 있는지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한 열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6페이지입니다.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계측전문인력 사전 실무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정·고시된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운영에 기여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9페이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 업무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상시계측관리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계측DB 이력관리, 위험성 분석, 계측기 점검, 주민 대피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에 있어 협회를 활용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업무의 위탁이 아닌 대행 규정을 통해서 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급경사지의 상시계측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행 규정을 통해서 원 권한자의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책임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에서 계측업자에게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시계측관리 업무체계가 위탁과 대행으로 이원화되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경사지안전협회에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탁이 아니라 대행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뭘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그만큼 차이가 나나요? 위탁과 대행이라는 용어를 바꿀 정도로 큰 차이가 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개념상으로 위탁은 위탁받은 자, 수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대행한다는 것은 위탁을 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업무는 대행자가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냐 아니면 협회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두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만 하자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제가……

○소위원장 서범수 책임을 더 강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23페이지입니다.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이행 수준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벌칙으로 상향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응급조치 등 의무 및 안전조치명령 의무이행의 시급성,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유사입법례를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현행법의 응급조치 등 의무 또는 현행 안전조치명령 이행 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라고 그래서 형벌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경제형벌로 전환하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일단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규정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과태료는 얼마까지 상한으로 할 수 있나요? 현재 200만 원으로 돼 있고 벌금은 2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이렇게 하고 벌금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로 할 경우에 더 중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과태료를 지금 있는 거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과태료로 했을 때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벌금으로 넘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로 돼 있는데 과태료를 조금 상향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의견처럼 현 정부의 형벌을 경제 제재화하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이러한 응급조치명령과 안전조치명령을 미이행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또 다른 범죄가 되니까, 단순한 미이행 자체는 현행 과태료 이걸 약간 높이는 수준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4호·5호를 과태료 항목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현행을 유지하자는……

○소위원장 서범수 현행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현행을 유지하면서 올리자는 거지, 과태료 금액을.

○소위원장 서범수 37조 과태료 조항을?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 조항의 200만 원을 유지하셔도 좋겠고 만약에 처벌을 강화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금액을 좀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그래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태료 200만 원은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 저도 동의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벌금으로 먹이고, 그다음에 징역을 살리고 이런 것을 탈피하자는 정도의 취지에 맞춰서 과태료 상향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지는 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들이 선택한다면 지금 다른 과제들, 제가 갖고 있는 300 또는 500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위원** 예, 500으로 하시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소위원장 서범수**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지금 이 법에서 과태료는 200만 원밖에 없어서 아마 조를 신설하거나 해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부남 위원** 200만 원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500만 원으로……

○**전문위원 나아정** 왜냐하면 다른 위반행위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500만 원으로 하려면 조를 신설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다른 행위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 합쳐 가지고 500만 원 이하로 해 버리면 안 되나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200만 원을 하든지 300만 원을 하든지 해 버리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그런데 항을 신설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항을 신설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의미도 있고.

○**소위원장 서범수** 항을 신설하자고요?

○**양부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1·2항이 가만히 있으면서 괜히 5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정 변경도 없는데. 그래서 항을 달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이재관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항을 따로 신설하세요. 200만 원 이하의 항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항, 따로 신설해서 하나 만들어 오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하나 만들어 오시지요. 일단 그것 만들어 오기 전까지 다른 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급경사지 관리 기관에 새롭게 추가되는 교육청 및 학교 등의 준비기간 및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만들어 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보행안전법 이재관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주변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장소의 주변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에게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박스 내용을 보시면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구역에서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정안에서 사고위험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무이행 대상의 특징을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수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변 지역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리고 뒤편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1호의 경우에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수정을 하였고 3호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3호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3호 대신에 저희한테 만약에 어떤 걸 추가하면 좋으나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3호 대신에 추가하는 안으로 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 공사를 할 때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행취약자에 대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했는데 나름대로 구체성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행안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취약자 하면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 지정돼 있어요, 장애인하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사천오백 군데,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백팔십팔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4500. 장애인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장애인은 188개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보면 지정이 되면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한 70~80% 돼 있나요? 한 50%로 돼 있나,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돼 있는 것부터 일부가 돼 있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서 몇 퍼센트 돼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런데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지정만 돼 있지 시설이 잘 안 들어가져요, 지역에서 보면. 지정만 해놨대. 그런데 지정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그 구역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으로 어디까지가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제1항에 따른 지정된 1호 그다음에 2호는 그대로, 3호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예.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8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통로 등 설치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

고 또 법 시행 당시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사업 수행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 법 제정 당시에 22년도에 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서영교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안소위 심사에서 진흥원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해당 사항이 삭제된 대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진흥원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세 가지 안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현행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안이고 두 번째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의 정책 수립·집행과 외부·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출연을 통한 집행을 병행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등 관련 민간기관을 정책 집행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주무부처가 직접 정책 과정 전반을 관리하되 사업 내용별로 외부·민간기관에 집행을 위탁하여 타 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위탁 집행 방식으로 다른 기관이 사업 집행을 맡게 되면 해당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으

며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등 민간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점, 회원사 등 민간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 위탁 집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난안전산업 진흥·발전 관련 주요 예산사업이 밑에 나와 있고요. 그 수행 방식으로 다양한 기관이 위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직·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산업 진흥·발전 관련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안인데요.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존 기관의 조직·기능 확대를 통해 연구·기술개발 분야와 산업 진흥·발전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 진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기관 설립 대비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적을 가능성 또 연구원과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타 산업의 사례 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9페이지에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는 산업 진흥·발전 정책 집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외부·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고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흥원이라는 단일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 진흥·발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진흥원을 설립·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향후 매년 평균 45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위탁 사업예산에 포함된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활용해서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 이 중에서 27억 원가량은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각 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항 1호에 보시면 재난안전기술 개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집행하지 않고 직접 하는 기술개발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연구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재난안전기술 개발 관련 정책·제도 조사·연구 지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설립 목적을 반영해서 문구를 조정하고 기술개발 촉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진흥원이 설립되는 경우에 1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이 진흥원에 출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내용을 추가했구요. 이거는 일반적인 진흥원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추가를 하였고 그 밑에 있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도 마찬가지로 진흥원 소속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행 방식이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8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R&D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R&D 사업 자체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데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서 위탁 수행되다 보니까 시너지를 내는 데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재난안전연구원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난안전연구원이 민간기관이 아니다, 여기도 공무원 조직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가더라도 직접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또다시 위탁하는 지금 현행 체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지금 규정이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 논의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설립 여부는 또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지금 현재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의율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재정부 등을 설득하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걸 현재 있는 연구원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다 용역이 나가서 자료는 축적이 되지 않고 재난은 계속 터지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면 R&D는 또 다른 기관이, 행사는 또 다른 기관이, 수출입은 다른 기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것을 한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그걸 왜 나누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연구원은 직접적인 연구도 합니다마는 거기도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정책에 관련된 서포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범수 다 정부정책이잖아요. 다 정부정책이지. 정부정책이 아닌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서 R&D 쪽에 중점을 뒀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R&D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재난안전연구원이 직접……

○소위원장 서범수 아니, 그런데 R&D를 안 주는데 여기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R&D 사업을 전부 다른 데 준대며요. 한국방재협회, 한국산업기술협회, 능률협회 이런 데 주고 재난안전연구원에는 안 주는데…… 하나도 안 주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연구원이 하는 과제들을 전부 다 지금 밖으로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가서 이것을 분산시킨다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우리 본부에서 하는 연구들도 산기평이라는 데 주지만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산기평에 쥐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고 그냥 용역 R&D 사업을 배분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R&D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안전지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풍수에 관련된 시험을 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들이 있어서 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거기에 플러스 산업기술진흥원 하나 더 만들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2안…… 1안이 기존 행정안전부 소속 활용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만들고 재난안전연구원 놔 놓고 또 옆에는 산업진흥연구원 놔 놓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방식이 되면 이쪽에 재난안전산업과에서 하던 걸 그냥 연구원으로 옮겨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그냥 업무만 옮겨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려면 민간에서 좀 플렉서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연구원 자체가 민간 연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에 줘서 연구원이 좀 플렉서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연구원은 행정연구원이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거 민간에게 놔 놓으면 되지, 민간에게 하라고 놔 놓으면 되지 왜 굳이 정부에서 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이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서범수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은 민간인이 한다며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진흥원 자체는 설립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닌 조직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그거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인데 그것도. 물론 이해는 돼요. 다른 부처에서도 R&D 연구기관이 있고 산업진흥발전 업무수행 기관이 있고 나누는 건 이해는 되나 이걸 굳이 정부에서 해야 되나?

이거 언제부터 하려고, 제법 오래전부터 하려고 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계속 갑시다, 계속 보류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재난안전산업이라는 게 규모도 저희가 기업 개수라든지 매출액 규모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한번……

○소위원장 서범수 가만히 놔 놓으면 잘해요, 기업은. 왜 정부에서 개입하려고 그래요? 기업은 가만히 놔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업무들이 여러 기관에 나뉘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어디 한 군데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김성희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진흥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기관들을 합쳐서 그 안에서 시너지도 나고 그게 해외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산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작게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에 대한 지원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좀 잘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 그런 산업들을 퍼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진흥원이 있는 것 자체는 나쁠 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좀 고민할게요. 좀 고민합시다. 이것 잠시만 보류 좀 합시다. 재난안전연구원이나 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보류를 할게요.

의사일정 제34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소하천정비법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소하천정비종합·중기·시행계획 및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는 교량, 암거, 복개구조물, 세월교, 보 등 유수의 흐름·치수·이수·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소하천 예정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기간을 축소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를 보시면 하천법에서는 종전에 하천 예정지 지정·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

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간 단축하는 것에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예를 들면 소하천 예정지 지정·고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제한했던 규제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묶여 있던 거를 2년 안에 사업 안 하면 그 규제에서 풀려나서 공작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가 좀 바쁘겠네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민들은 편해지시는 거고 정부는 그 안에 예산을 따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정부가 부담을 지는 그런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요건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리청의 인공구조물 등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설치, 평상·그늘막 설치, 무허가 영업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에서 무단 점용·사용 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하천 인근의 무단 점용·사용 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하천 안전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하천법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맥락에서 반복적·상습적인 무단 하천 점용·사용에 대해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이 조항 없이도 행정대집행 할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요건을 조금 더, 지금 지방에서 의견은 상습·

반복적으로 계속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지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실효적인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 조항이 없어도 행정대집행 할 수 있잖아요. 못 합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이 조항이 없더라도 행정대집행은 가능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가능합니다.

○양부남 위원 굳이 이걸 둔 이유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 같은 걸 설치해 놔다가 변상금이나 이런 것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고 또 그게 한철 장사 끝나면 철거했다가 다음에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대집행을 면탈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습·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규제를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대집행이 되도록……

○김성희 위원 그 규제가 이행강제금이에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이 들어와서 어떠한 편리점이 있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조항이 없어도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좀 궁금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자연재난대응국장입니다.

보통 대집행을 하게 되면 계고하고 영장 통지하고 이런 식의 최소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통상 하천 점용 같은 경우는 여름철 한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계고를 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계속 버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양부남 위원 이 조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특례에 따르면 계고라든지……

○양부남 위원 그 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가능해요?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소위원장 서범수 그게 특례조항이 있나요, 이 법안에?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그렇습니다. 특례로 해서 그렇게……

○소위원장 서범수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행정안전부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상습·반복적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두 번이면 상습·반복이나 이렇게 하지만 개인이 상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장소에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 이상이면 일단 상습·반복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다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한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서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대집행에 따른 대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위임 형식 구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하천 등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 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청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고 점용료등·변상금 및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8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별로 금액 및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인상을 상한, 점용일수 등의 계산 방식이 상이해서 소하천 점용·사용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소하천 관리청별로 징수하는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점용료등·변상금·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일차적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유사입법례로 하천법의 경우에도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금액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워낙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범위 내에서 정하라는 것을 조례에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4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적용례로 신설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

수방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6개월의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고 적용례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일단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성곤·김승원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추진 의무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대피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거나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를 통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피명령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비교 박스를 보시면 위성곤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대피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대피명령 개선과 관련해서 위성곤 의원안에서는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에서는 대피명령 개선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피 방법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령은 대피명령의 발령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피계획의 수립이나 대피명령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 개정안은 현행법령의 미비한 측면을 보완하여 대피명령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대피명령의 발령 주체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피계획의 수립·추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대피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과 대피명령의 연계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인데요. 대피명령의 실행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대피명령에 관해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4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성곤 의원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추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피명령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피계획 수립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정합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서 자치단체장으로 수정을 했고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3항을 보시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과 대피명령의 연계성 확보, 대피 지원 대상을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안의 내용에 김승원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대피 방법에 관한 정보도 재난 예보·경보·통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성곤 의원안의 4항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피장소, 대피 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5항을 신설해서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수정의견에 왜 국가가 빠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명령권자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피계획, 이것은 실행계획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가 세운다면 계획 이런 것보다는 대피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이런 것을 국가가 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대피해야 되는 계획을 국가에 주는 것은……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 놓고는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해야 된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요? 국가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국가는 빼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 놓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이걸 뭐예요? 그러면 국가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더라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라 이 소리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피명령이라면 아예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러면 전권을 줘야 되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하라는 소리는 내용적으로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법률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의 이런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권……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요. 국가도 들어가야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넣는다면 대피계획을 국가가 수립해라, 같은 대피계획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국가를 넣는다면 대피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국가가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체계상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금방 본부장님께서서는 대피명령은 자치단체장이 한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전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대통령령을 만들어 줄 테니 거기에 따라라 이 소리잖아.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빼고 정 자치단체장한테 전권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피로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

○**소위원장 서범수** 너무 친절한 행안부네요.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이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들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빼라고 하시면 저희들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그래서 저는 위성곤 의원안에 ‘국가와 자치단체’ 이렇다가 국가가 빠지고 대신에 또 대통령령이 들어가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그 부분 만약에 삭제……

○**소위원장 서범수** 그러면 삭제합시다. 해도 별문제는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부칙.

○**전문위원 나아정** 8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승원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행안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어떤 게……

○**전문위원 나아정** 소위원장님, 아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과태료 500만 원 상향과 관련된 조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37조(과태료)의 당초 1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하고 1호부터 8호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을 2항으로 내리고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신설해서 응급조치하고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두 호를 각 호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고 행안부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칠승 김성희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이상식 이재관

○청가 위원(1인)

용혜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안전정책국장 서주현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경찰청

차장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경비국장 고범석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 신호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차장직무대리 주영국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한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